

# 2012년도 정기세미나 종합보고서

- 발제 및 토론내용 -

2012. 11.

정책연구팀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이 책에 게재된 논문의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집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위원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권성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 이곳 양평까지 먼 걸음을 해주신 모든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곳을 오다가 양평 조금 못 미쳐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양수리(두물머리)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양수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다산(茶山) 정약용의 생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50년 전에 태어난 다산이 여러 면에서 선구자적인 삶을 산 데에는 태어나서 자란 주변 환경도 한 몫을 했을 것입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라는 두 개의 강이 만나 한강이라는 새로운 강을 이루어 흘러가는 모습 속에서 다산은 아마도 나라와 민족의 미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으리라 짐작합니다.

서로 다른 것이 만나 합쳐지고 새로움을 이뤄가는 것이 결국 세상의 이치일 것입니다. 이 점에서 저는 언론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언론을 이루는 하나의 큰 물줄기는 물론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인격권 보호'라는 또 다른 큰 물줄기가 면면히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물줄기는 결국 어디선가는 만나게 되어 있고 이 만남은 보다 크고, 넓고, 원대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 됩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초상권'이나 '인격권'하면 대체로 귀찮고 피곤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오늘날 보다 강도 높은 인격권 보호 요청은 회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 흐름을 무작정 거스

르지만 았고 잘 마주하고 적응한다면 우리 언론이 한 단계 성장,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았습니다.

이미 았고 계시겠지만 이번 저희 위원회 세미나의 주제는 「영상·사진보도와 초상권 침해」입니다. 올해 저희 위원회 통계를 살펴보니, 연초부터 9월 말까지 접수된 조정중재사건 중에서 초상권 침해 사안은 40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이 지급된 사건 중 약 28%가 초상권 침해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사건수가 아직 많지는 았으나 초상권은 결코 간과할 만한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오늘 세미나가 초상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며 저희 위원회로서는 현장에 계신 기자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세미나를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해주셨습니다. 우선, 바쁜 재판 업무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세미나 사회를 맡아주신 임병렬 부장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제1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손영준 교수님과 제2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김재형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의 탁월한 연구와 발표로 인해 오늘 세미나가 아주 밀도 있고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은경, 김정탁 교수님, 배재만 한국사진기자협회 부회장님과 박도운 CJ E&M 부장님 네 분의 지정토론자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밖에도 오늘 세미나에 전국 각지에서 많은 중재위원님들, 기자, 교수님들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세미나가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유익하고 기억에 남을 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저의 인사말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 10. 25.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권 성

# 목 차

## <제1주제> : 언론조정·중재 사례를 통해 본 초상권 침해 현황 및 특징

I. 서 론	3
II. 초상권 침해 관련 언론조정·중재 현황 및 특징	7
1. 전체 현황	7
2. 초상권 침해 관련 언론조정의 세부 현황	10
III. 초상권 침해 관련 언론조정·중재 사례	16
1. 본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된 경우	16
2. 본인의 동의를 벗어나 초상이 보도된 경우	18
3. 보도내용과 무관하게 자료화면으로 이용된 경우	19
IV. 요약 및 결론	20
제1주제 지정토론	26

## <제2주제> : 초상권 침해에 관한 법리적 검토 및 올바른 보도방법 고찰

I. 서 론	35
II. 초상권의 개념과 근거	37
1. 초상권의 개념	37
2. 초상권의 근거	39
III. 초상권의 내용과 보호범위	40
IV.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	42
1. 개설	42
2. 초상권자의 동의	42
3.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관한 보도	46
4. 공적 인물의 문제	47
V. 초상권에 대한 구제수단	48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48
2. 금지청구권 .....	56
3.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	57
VI. 결론 - 올바른 보도 방법 .....	57
제2주제 지정토론 .....	59
종합토론 .....	68



## 제 1 주제

# 언론조정·중재 사례를 통해 본 초상권 침해 현황 및 특징

손 영 준



# 언론조정·중재 사례를 통해 본 초상권 침해 현황 및 특징

손 영 준

서울제3중재부 중재위원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 I. 서론

영상물이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는 시대이다. 언론환경은 ‘읽는’ 매체 시대에서 ‘보는’ 매체 시대로 변했다. ‘읽는’ 매체 시대에서는 원고지와 볼펜만 있으면 됐다. 그러나 ‘보는’ 매체 시대에는 영상이 중요하다. 그럴듯한 사진과 화면으로 독자와 시청자, 네티즌의 시선을 한순간에 사로잡아야 한다. 요즘 언론은 한 발 더 나아가 독자와 시청자의 눈을 끌 수 있는 ‘스토리(story)’가 있는 ‘실감나는’ 사진이나 화면을 좋아한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대충 찍지 않는다. 그 사람 얼굴 사진을 통해 어떤 분명한 메시지(message)가 수용자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언론인들이 사진이나 화면 같은 영상물을 보도함에 있어서 이런 목적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영상을 - 그것도 적시에 - 확보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실감나는’ 영상물을 그것도 ‘손쉽게’ 구하려다보니, 사람들의 초상이나 용모를 보도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영상물

을 보도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초상권의 문제는 이런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예를 살펴보자. 조선일보는 2012년 9월 1일자 신문 1면<sup>1)</sup>에 나주 초등학교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라며 한 젊은이의 사진을 게재했다. 그러나 사진의 주인공은 그 사건과 무관한 사람이었다. 조선일보는 다음날 정정 보도를 냈다. 잘못된 보도라며 사과를 했다. 그 젊은이는 흉악범 피의자로 지목돼 신문 1면에 실린 본인의 사진을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었을까? 오보 소식을 듣고 “미칠 지경이었다”는 그 젊은이가 받은 피해는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sup>2)</sup> 그 젊은이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지는 알 수 없다.

조선일보를 포함해 많은 신문들은 다음날 피의자 고모씨 사진을 일제히 게재했다. 이번에는 오보가 아니었다. 피의자 스스로 범행을 자백했다고 한다. 그러나 각 언론사가 보도한 피의자 사진은 시각적으로 큰 차이가 있었다. 어떤 신문사는 피의자 얼굴을 식별하기 어려운 사진을 실었으며, 어떤 신문사는 자세히 보면 누군지 알 수 있는 사진을 실었다. 이런 차이는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입장차에서 비롯된 것이다. 피의자가 누군지 정확히 분간하기 어려운 사진을 실은 언론사는 초상권이 범죄피의자를 포함해 모든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적 인물이 아닌 형사 사건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사진을 게재한 언론사는 국민의 알 권리(right to know)를 충족시키고 유사 범죄의 예방을 위해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이에 대해 어떤 법률적 판단을 제시할 재간이 없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 공분(公憤)에 찬 여론의 압력을 내세워 피의자 초상을 공개하는 것이 과연 법치(法治)에 부합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또 여론의 향배에 따라 사진 공개여부를 정하는 것이 정의로운 방식인지도 의문이다. 피의자 상태에서 초상과 성명을 공개한

1) 조선일보 2012년 9월 1일자, “병든 사회가 아이를 범했다”

2) 노컷뉴스 2012년 9월 1일자, “무고한 시민 얼굴을 고종석으로... 조선일보 대형오보”

다면, 피의자를 공인(公人)으로 간주한다는 것인지도 궁금하다.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보면, 범죄피의자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얼굴 공개는 언론 윤리문제에 해당된다.<sup>3)</sup> 사인(私人)의 초상을 동의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개인의 인격권 침해’와 ‘공적 이익의 확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이다. 목적이 숭고하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은 정의로운 것이며 또 합리화될 수 있는가? 나주 피의자 얼굴 공개를 둘러싼 오보 해프닝과 뒤이은 후속 보도는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권리이다. 즉 사람이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동의 없이 촬영돼 공표되지 아니하고(문재완, 2008; 유일상, 2000) 또한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권리(박경신, 2008)이다. 초상권은 헌법 10조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과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조항에 의거해 정당한 인격적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sup>4)</sup>

초상권 침해는 그림이나 광고, 서적 등을 통해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대중매체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언론보도를 통해 초상권 침해가 발생하는 구조적인 이유

---

3) 우리 언론은 흉악범 얼굴이나 이름을 보도하는데 있어서 각 언론사별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사건의 비중과 여론의 반응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언론관련 규정(신문윤리강령 5조 ‘개인의 명예존중과 사생활 보호’; 신문윤리실천요강 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규정 19조 ‘사생활 보호’, 20조 ‘명예훼손의 금지’, 23조 ‘형사 피의자 무죄추정 원칙’ 등)도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해 원론적 준칙을 적시하고 있지만, 구체적 판단은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흉악범 얼굴 공개는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때 일부 언론이 ‘알 권리와 범죄 예방’이라는 공익(public interest)을 명분으로 사진을 게재하면서 시작했다. 몇몇 언론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 인권보호차원에서 사인(私人)의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근에는 언론사간의 보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대부분의 신문 방송이 흉악범의 경우에는 초상을 공개하는 추세이다. 미디어오늘, 2012년 9월 12일자 “성폭행 사건 언론사별 보도준칙 만들어야.”

4)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는 다음의 두 가지가 크다고 생각한다.

첫째,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기초한 언론의 취재보도 관행이다. 언론은 공적인 업무수행이나 정책 집행, 공적 이익과 관련된 활동, 국민적 관심을 받는 이슈 등이 뉴스 가치(news value)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취재대상에게 게재여부를 일일이 물어 보지 않고 보도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다. 공적인물의 경우에는 초상권이 크게 논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문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 개인(私人)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이다. 언론인이나 언론사는 알 권리의 범위에 대해 가급적 확대 해석하는 경향인데 반해, 법원의 판단은 알 권리의 범위와 대상을 상대적으로 축소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매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초상권 침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같은 개인 매체 이용이 활발해지고 또 영상매체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허락받지 않고 - 또는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서 -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동시에 인터넷 블로그나 스마트폰을 통해 영상물이 게재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당사자가 초상권 침해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sup>5)</sup>

언론의 초상권 침해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는 공적 제도는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이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은 18조 2항에서, “피해자는 언론보도 등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글은 초상권의 1차적 구제수단으로서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및 중재 사례를 통해, 언론기관에 의한 초상권 침해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5)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을 언론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팔로어가 148만 명이라는 ‘트위터대통령’ 소셜가 이외 수씨가 다른 사람의 영상물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려 그의 초상권을 결과적으로 침해했다고 하자. 이런 경우는 트위터라는 개인간 미디어를 통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중을 상대로 한 언론행위(mass communication)의 효과가 나타난 사례로 볼 수 있다.

## II. 초상권 침해 관련 언론조정·중재 현황 및 특징

### 1. 전체 현황

언론중재위원회는 방송이나 신문, 통신 그리고 인터넷 매체의 보도를 통해서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조정신청 또는 중재신청을 접수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1) 조정

언론중재위는 법정기구로 설립된 1981년부터 2011년까지 31년 동안 모두 18,220건의 조정사건을 처리했다.<sup>6)</sup> <표 1>에 제시된 것처럼, 개인의 인격권과 관련된 초상권이나 성명권, 음성권,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조정이 처리된 2005년 이후 조정사건 9,869건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청구가 9,165건으로 전체의 92.9%를 차지했다. 명예훼손 사건을 제외하면 초상권 침해에 대한 조정이 349건(3.5%)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한 해 평균 49.8건 정도의 초상권 침해 청구가 있었다.

연도별로 보면, 2005년에는 15건에 불과했으나 2006년 48건, 2007년 53건으로 점차 늘어났다. 2008년에 29건으로 줄었다가 2009년, 2010년에는 각각 56건, 109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인터넷 포털 뉴스가 2009년부터 조정대상으로 편입되면서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지난해 2011년에는 다시 39건으로 줄어들었다.

6) 언론중재위원회 2005년 연간보고서, 2006년 연간보고서, 2007년 연간보고서, 2008년 연간보고서, 2009년 연간보고서, 2010년 연간보고서, 2011년 연간보고서,  
<[http://www.pac.or.kr/html/about/ab\\_report\\_list.asp](http://www.pac.or.kr/html/about/ab_report_list.asp)>  
언론중재위원회 30년사 (2012) <[http://www.pac.or.kr/html/data/dt\\_30y.asp](http://www.pac.or.kr/html/data/dt_30y.asp)>

〈표 1〉 연도별 침해 유형별 조정 현황(건,%)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명예훼손	827 (93.7)	1,004 (92.4)	953 (91.4)	899 (94.2)	1,457 (92.6)	1,995 (90.5)	2,030 (95.6)	9,165 (92.9)
초상권 침해	15 (1.7)	48 (4.4)	53 (5.1)	29 (3.0)	56 (3.6)	109 (4.9)	39 (1.8)	349 (3.5)
신용훼손	23 (2.6)	17 (1.6)	2 (0.2)	6 (0.6)	6 (0.4)	20 (0.9)	8 (0.4)	82 (0.8)
성명권 침해	14 (1.6)	1 (0.1)	3 (0.3)	4 (0.4)	1 (0.1)	4 (0.2)	22 (1.0)	49 (0.5)
음성권 침해	2 (0.2)	7 (0.6)	12 (1.2)	10 (1.0)	5 (0.3)	3 (0.1)	-	39 (0.4)
프라이버시 침해	-	4 (0.4)	11 (1.1)	3 (0.3)	18 (1.1)	20 (0.9)	24 (1.1)	80 (0.8)
기타	2 (0.2)	6 (0.6)	9 (0.9)	3 (0.3)	30 (1.9)	54 (2.4)	1 (0.0)	105 (1.1)
계	883 (100.0)	1,087 (100.0)	1,043 (100.0)	954 (100.0)	1,573 (100.0)	2,205 (100.0)	2,124 (100.0)	9,869 (100.0)

출처: 언론중재위원회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간보고서

〈표 1〉의 초상권 침해 조정 현황에 나타난 특징적인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상으로 보면, 전체 조정사건에서 초상권 침해 청구 비율(3.5%)이 상대적으로 낮다. 명예훼손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를 언론보도에서 초상권 침해 사례가 많지 않다거나 또는 중재위원회 심리에서 초상권 관련 사항이 그렇게 많이 다루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본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청구 사건의 특성이 초상권 침해를 포함해 복합적 성격을 띠는 경우에 피해자들이 조정과 중재를 신청함에 있어서 사건의 주된 피해 유형을 명예훼손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초상권 침해의 여지가 있더라도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받은 권리가 복합적·다면적 성격을 갖는 경우, 포괄적 권리 침해인 명예훼손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난 7년간 초상권 침해로 청구된 349건은 그 사안의 주된 침해가 명백하게 초상권에 해당되는 경우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둘째, 초상권 청구가 2010년을 정점으로 2011년에 대폭 감소했다.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어떤 장기적인 추세를 반영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초상권과 관련해, 언론계 내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언론사나 언론인 측면에서 보면, 메이저 언론사를 중심으로 초상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정정보도 가능성을 더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송은 초상권 침해를 고려해, 사람의 얼굴이 식별되지 않도록 모자이크 처리하는 경우가 확실히 많아졌다. 물론 공중파TV나 메이저 신문에서 이런 변화가 감지된다고 해서 초상권 침해 소지가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언론사간의 영상특종 경쟁이 치열하고 또 단순한 과실 등의 이유로 초상권 침해 가능성이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동시에 신생 인터넷 언론 가운데는 초상권에 대한 편집상의 고려가 충분하지 못한 곳이 적지 않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2) 중재

2005년에 중재 기능이 도입된 후<sup>7)</sup> 2011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처리한 중재사건은 모두 332건으로 나타났다. <표 2>에 제시된 연도별 침해 유형별 중재 현황에 따르면, 중재의 경우에도 조정 심리와 비슷하게 전체 침해 사건의 88.6%가 명예훼손사건이다. 초상권 침해 사례는 전체 중재건수의 9.3%로 나타나 조정(3.5%)보다는 비율이 높다. 신용훼손에 대해서는 한 건의 신청도 없었다.

---

7)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제도 도입 때부터 '중재'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내용면에서 보면 '조정' 역할이 훨씬 많다.

〈표 2〉 연도별 침해 유형별 중재 현황(건,%)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명예훼손		3 (42.9)		4 (40.0)	99 (89.2)	76 (98.7)	112 (99.1)	294 (88.6)
초상권		3 (42.9)	12 (85.7)	5 (50.0)	10 (9.0)		1 (0.9)	31 (9.3)
신용훼손								
성명권		1 (14.3)						1 (0.3)
음성권				1 (10.0)	2 (1.8)			3 (0.9)
프라이버시			2 (14.3)					2 (0.6)
기타						1 (1.3)		1 (0.3)
사건 수	0 (100.0)	7 (100.0)	14 (100.0)	10 (100.0)	111 (100.0)	77 (100.0)	113 (100.0)	332 (100.0)

출처: 언론중재위원회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간보고서

## 2. 초상권 침해 관련 언론조정의 세부 현황

초상권 침해 청구사건의 특징을 1) 초상권 침해 유형, 2) 청구 유형, 3) 손해배상 조정액, 4) 매체 유형, 5) 처리결과 유형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8)</sup>

### 1) 초상권 침해 유형

초상권이 침해되는 유형은 세 가지 경우로 나뉘볼 수 있다. 첫째,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초상 사진이나 화면을 사용한 경우이다.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사용한 경우, 타인이 제공한 초상사진을 동의 없이 사용한 경우, 다른 매체가 게재한 초상사진을 복제하여 무단 전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본인의 동의를 받아 촬영했지만 그 동의의 범위를 넘어서 사용하는 경우이다. 셋째, 보관중인 자료사진이나 영상파일을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승선, 김연식, 2009).

8) 언론중재의 경우 전체 건수가 31건에 지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3>에 제시된 것처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초상권 침해 조정 사건 가운데 68.5%는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진이나 화면을 사용한 경우’이다. 전체 초상권 침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지만, 절대 사건 수는 적지 않다. 두 번째 유형인 ‘동의를 받았지만 허락한 범위를 넘어서 사용한 경우’에 대한 초상권 청구는 전체의 22.2%를 차지한다. 이 유형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다.

**<표 3> 초상권 침해 유형(건,%)**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동의 없이 무단 사용	44(83.0)	26(89.7)	37(66.1)	63(57.8)	170(68.5)
동의를 범위를 벗어나 사용	7(13.2)	2(6.9)	10(17.9)	36(33.0)	55(22.2)
보도내용과 무관한 자료화면으로 이용			9(14.3)	2(1.8)	11(4.4)
기타	2(3.8)	1(3.4)	1(1.8)	8(7.3)	12(4.8)
합계	53(100.0)	29(100.0)	56(100.0)	109(100.0)	248(100.0)

\* 2007년 이전과 2011년은 분석하지 못하였음.

## 2) 청구 유형별 초상권 조정 현황

<표 4>에 제시된 것처럼,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초상권 침해로 조정된 349건 가운데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는 305건으로 전체의 87.4%를 차지했다. 정정보도가 신청된 경우는 11.5%(40건)였으며, 반론보도는 1.1%(4건)에 불과했다. 청구 유형별 조정 현황과 관련해 특기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손해배상청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2005년의 경우에는 53%에 그쳤지만, 2006년부터는 90% 안팎의 손해배상청구 비율을 보이고 있다. 2011년에는 전체 조정 건수 가운데 92.3%를 차지했다. 이런 결과는 피해자들이 초상권 침해 구제방안으로 금전적 손해배상을 선호함을 보여준다. 둘째, 정정보도 혹은 반론보도를 신청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정정보도 신청의 경우 2005년 전체 조정 건수의 26.7%에 달했

지만 점차 감소해 2011년에는 7.7%에 그쳤다.

〈표 4〉 청구 유형별 조정 현황(건,%)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정정보도	4 (26.7)	6 (12.5)	5 (9.4)	5 (17.2)	5 (8.9)	12 (11.0)	3 (7.7)	40 (11.5)
반론보도	3 (20.0)		1 (1.9)					4 (1.1)
손해배상	8 (53.3)	42 (87.5)	47 (88.7)	24 (82.8)	51 (91.1)	97 (89.0)	36 (92.3)	305 (87.4)
계 (%)	15 (100.0)	48 (100.0)	53 (100.0)	29 (100.0)	56 (100.0)	109 (100.0)	39 (100.0)	349 (100.0)

손해배상이 구제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를 권리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표 5〉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침해 유형별 손해배상청구비율을 나타낸다. 손해배상청구 비율은 전체 조정 건수 대비 손해배상청구 건수이다. 음성권 침해의 경우가 89.7%로 손해배상청구 비율이 가장 높고,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87.5%, 초상권 침해가 87.4%, 성명권 침해가 79.6%로 나타났다. 초상권은 음성권, 프라이버시권, 성명권과 함께, 권리 구제 방안으로 손해배상이 많이 활용되는 인격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명예훼손은 전체 조정 9,165건 가운데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가 31.7%에 그쳤으며, 신용훼손도 전체 82건 가운데 20건(24.4%)밖에 되지 않았다.

〈표 5〉 조정 청구 유형별 손해배상청구 비율

	2005년~2011년 전체 조정 건수	2005년~2011년 손해배상청구 건수	손해배상청구 비율(%)
명예훼손	9,165	2,906	31.7
초상권 침해	349	305	<u>87.4</u>
신용훼손	82	20	24.4
성명권 침해	49	39	<u>79.6</u>
음성권 침해	39	35	<u>89.7</u>
프라이버시 침해	80	70	<u>87.5</u>
기타	105	31	29.5
계	9,869	3,406	34.5

출처: 언론중재위원회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간보고서

### 3) 손해배상 조정액별 초상권 침해관련 조정 현황

〈표 6〉은 초상권 침해 청구가 손해배상을 통해 조정된 경우의 조정 금액을 연도별로 정리한 결과이다. 손해배상 조정액을 보면, '100만 원 이하'가 전체의 47.5%로 가장 많았으며, '101만 원~200만 원'과 '201만 원~300만 원'은 각각 24.6%, 16.4%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301만 원~400만 원'은 3.3%, '401만 원~500만 원'은 4.9%, 그리고 '501만 원 이상'은 3.3%에 불과했다.

손해배상을 통해 조정이 된 경우에, 전체의 88.5%의 사례에서 조정액이 300만 원 이하였다. 이 정도 수준의 조정액이 초상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필요 충분한 금액인지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sup>9)</sup>

9)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손해배상청구심리는 법원에 비해 손해배상 합의 비율이 낮고 또 손해배상 금액도 적다는 특징이 있다(언론중재위 보도자료, 2011, 7. 22). 즉 언론중재위에 신청된 모든 손해배상청구사건 가운데 손해배상이 실제 이뤄진 사건의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에는 12.7%, 2009년 7.2%, 2010년 5.6%에 그쳤다. 그러나 법원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각각 52.1%, 47.0%, 26.8%로 조사됐다. 또 언론중재위와 법원의 손해배상 금액(평균값)은 언론중재위의 경우 2008년 333만원, 2009년 359만원, 2010년 274만원이었으며, 법원의 인용액은 각각 2,340만원, 2,348만원, 2,424만원이었다. 언론중재위와 법원의 건당 손해배상 금액을 단순 비교하면 언론중재위를 통한 손해배상액은 법원의 14.2%(2008년), 15.2%(2009년), 11.3%(2010년) 수준에 해당한다.

〈표 6〉 초상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조정액(건,%)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100만원 이하		13(59.1)			4(30.8)	12(75)	29(47.5)
101~200만원		6(27.3)	3(50.0)	2(50.0)	3(23.1)	1(6.3)	15(24.6)
201~300만원		2(9.1)		2(50.0)	3(23.1)	3(18.8)	10(16.4)
301~400만원		1(4.5)			1(7.7)		2(3.3)
401~500만원			1(16.7)		2(15.4)		3(4.9)
501만원 이상			2(33.3)				2(3.3)
합 계	0(100.0)	22(100.0)	6(100.0)	4(100.0)	13(100.0)	16(100.0)	61(100.0)

\* 2011년은 자료 미비로 집계되지 못했음

#### 4) 매체 유형별 초상권 침해관련 조정 현황

〈표 7〉은 초상권 조정 현황을 매체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다. 먼저 방송이 전체의 39.0%로 초상권 조정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인터넷뉴스서비스는 24.1%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일간신문과 인터넷신문은 각각 12.9%와 12.0%로 나타났다. 포털사이트 등의 인터넷뉴스서비스는 2009년부터 언론중재위 조정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초상권 조정 사례 수는 방송 다음으로 많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신문의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 조정 사례가 감소하고 있다.

〈표 7〉 매체 유형별 초상권 조정 현황(건,%)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일간신문	1(6.7)	15(31.3)	10(18.9)	4(13.8)	5(8.9)	7(6.4)	3(7.7)	45(12.9)
주간신문		4(8.3)	5(9.4)	2(6.9)	1(1.8)	2(1.8)		14(4.0)
방송	10(66.7)	21(43.8)	27(50.9)	14(48.3)	29(51.8)	14(12.8)	21(53.8)	136(39.0)
케이블TV	5(33.3)							5(1.4)
잡지		5(10.4)	1(1.9)		3(5.4)			9(2.6)
뉴스통신		1(2.1)	6(11.3)	3(10.3)		2(1.8)	1(2.6)	13(3.7)
인터넷신문		2(4.2)	4(7.5)	5(17.2)	7(12.5)	19(17.4)	5(12.8)	42(12.0)
인터넷뉴스 서비스					11(19.6)	65(59.6)	8(20.5)	84(24.1)
기타				1(3.4)			1(2.6)	2(0.6)
계	15	48	53	29	56	109	39	349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인터넷뉴스서비스는 2009년부터 조정대상이 됨

#### 5) 초상권 침해관련 처리 결과

〈표 8〉에 제시된 것처럼, 초상권 침해 조정은 신청인 취하로 해결되는 경우가 45.8%로 가장 많았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33.8%로 전체 청구 가운데 1/3 정도를 차지했다. 조정성립 비율은 2006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직권으로 조정이 결정된 경우와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는 각각 7.4%에 달했다. 기각된 경우도 5.4%를 차지했다. 기각은 주로 언론보도와 초상권 침해 사이의 관련성이 낮은 경우에 이뤄진 것이다.

초상권 침해 처리 결과와 관련해 특이한 점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취하가 많다는 것이다. 〈표 8〉을 보면 신청인이 취하한 경우가 160건인데, 이 중 76.9%에 달하는 123건(표에서 [ ]로 표시된 부분)은 신청인이 언론기관과 합의를 한 뒤 자발적으로 취하한 것이다. 합의 후 취하는 대개 신청인이 조정과정에서 피신청인측과 정정보도, 반론보도, 사과, 기사게재, 손해배상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구제를 약속받거나

피해구제방안이 이행돼 조정신청을 스스로 취소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취하를 했지만 사실상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전체 취하 160건 중 23.1%인 37건)와 합의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은 경우는 구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합의 후 취하는 사실상 조정에 갈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8〉 처리결과 유형별 조정 현황(건,%)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조정성립	3 (20.0)	27 (56.3)	21 (39.6)	11 (37.9)	20 (35.7)	27 (24.8)	9 (23.1)	118 (33.8)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1 (6.7)	9 (18.8)	5 (9.4)	1 (3.4)	5 (8.9)	1 (0.9)	4 (10.3)	26 (7.4)
조정 불성립결정	1 (6.7)	5 (10.4)	2 (3.8)	3 (10.3)	2 (3.6)	10 (9.2)	3 (7.7)	26 (7.4)
기각	3 (20.0)			1 (3.4)		12 (11.0)	3 (7.7)	19 (5.4)
취하	7 [5] (46.7)	7 [3] (14.6)	25 [11] (47.2)	13 [10] (44.8)	29 [25] (51.8)	59 [54] (54.1)	20 [15] (51.3)	160 [123] (45.8)
계	15 (100.0)	48 (100.0)	53 (100.0)	29 (100.0)	56 (100.0)	109 (100.0)	39 (100.0)	349 (100.0)

\* [ ] 안의 숫자는 심리 이전이나 진행 중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피해구제(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에 대해 합의하거나 구제가 이뤄져 신청을 취하한 건수임

### Ⅲ. 초상권 침해 관련 언론조정·중재 사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중재를 통해 초상권 침해가 문제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최근 발생한 7건의 케이스를 무작위로 선정한 뒤, 1) 본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보도된 경우, 2) 본인의 동의 범위를 벗어나 보도된 경우, 3) 보도내용과 무관하게 자료화면으로 이용된 경우로 나눠서 살펴본다.

#### 1. 본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된 경우

1) 2011서울조정893 손배청구: 미혼남녀 미팅이벤트에 참여한 신청인의 초상과 음

**성을 동의 없이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방송)는 2011년 7월 서울시 강남구청 미혼남녀 미팅 행사를 보도하면서 여성 A씨의 초상과 음성을 모자이크 없이 방영했다. 방송 후 A씨는 “도시의 풍토병이 돼 버린 노처녀들”이라는 타이틀로 방송돼 수치심을 느꼈고, 자신의 허락 없이 초상과 음성을 보도했으며, 또 자신이 소개팅 행사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져 피해를 입었다며 2,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가 이뤄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2) 2010서울조정1590 손해청구: 휘발유 값 폭등 관련 사진에 주유원의 초상을 동의 없이 실어 피해를 입었다.**

○○신문은 2010년 12월 휘발유 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주유소에서 주유업무를 하던 신청인 B씨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계약사에 전송했다. 신청인은 자신이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을 당시 사진촬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지 못했고, 사진이 신문에 보도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바도 없으며, 사진이 이를 전송받은 각종 언론매체에 게재되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신청 후, ○○신문은 B씨에게 100만 원을 지급했고, B씨는 조정을 취하였다.



3) 2011서울조정1115 손해청구: TV프로그램 출연자에 대한 인터넷 비난글을 기사화 하면서 당사자 사진을 실었다.

직장인 여성 C씨는 ○○○(방송)가 2011년 주최한 남녀단체미팅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또래 남녀 출연자와 어울리며 색다른 경험을 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나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TV 프로그램을 본 누군가가 방송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녀의 사적인 남녀관계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으며, 이후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다. 인터넷 매체 ‘△△뉴스’는 이런 내용을 기사화하면서 C씨의 사진을 게재했다. C씨는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결과, 초상권 침해가 인정돼 손해배상액 150만 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었다. C씨는 인터넷 매체 ‘△△뉴스’외에도 이 사건을 보도한 다른 인터넷 언론사 6개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해, 각각 조정이 이뤄졌다.

## 2. 본인의 동의를 벗어나 초상이 보도된 경우

1) 2011서울조정1031 손해청구: 카드사 ‘리볼빙 제도’의 문제점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동의 범위를 넘어 초상 및 실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방송)는 카드회사 리볼빙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도하면서, 리볼빙 서비스 이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신청인 D씨의 인터뷰를 방송했다. 방송 후 D씨는 음

성만 노출하는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했는데 모자이크 되지 않은 얼굴과 함께 실명, 나이, 영업장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가 이뤄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2) 2011서울조정697 손배청구: 아파트 부실시공을 비난하는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방송)는 2011년 서울 은평 뉴타운 부실공사 보도에서, 아파트 거주민 E씨의 인터뷰 내용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방송했다. E씨는 보도할 경우에 모자이크 처리를 해달라고 여러 번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초상이 그대로 노출되었고, 인터뷰 장면도 카메라가 찍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식 하지 못한 상태에서 촬영되어 초상권이 침해당했다며 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담당 중재부는 취재 당시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모자이크 처리를 전제로 신청인이 소극적으로 촬영에 응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피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촬영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응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3. 보도내용과 무관하게 자료화면으로 이용된 경우**

**1) 2011서울조정658, 659 정정, 손배청구: 보도와 무관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자료화면으로 사용했다.**

○○○(방송)는 2011년 5월 보도에서 20만 원이면 결혼 비용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알뜰 결혼 관련 소식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혼인 예복을 입고 촬영한 신청인 F씨의 초상을 동의 없이 자료화면으로 보도했다. 신청인은 방송에서 소개된 알뜰 결혼 방법으로 결혼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신청인의 화면을 방송해 주변 사람들로 부터 싸구려 결혼식을 했냐는 문의를 받게 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와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

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정정보도 게재와 함께 3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양 당사자는 결정에 동의했다.



2) 2010대구조정2 손배청구: 대게 불법 포획 기사를 보도하면서 2년 전 촬영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했다.

○○○(방송)는 2010년 동해안 대게자원의 고갈원인이 불법 어획 때문이라는 보도를 하면서 어업지도선이 불법조업을 하던 어선을 단속하는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보냈다. 그 자료화면은 2008년 촬영된 것이었다. 방송 후 화면에 얼굴이 잡힌 선원 G씨는 2008년 불법조업사건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는데 2년 뒤 그 화면이 또 다시 방송되어 초상권침해를 받았으며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 심리결과, 방송사가 피신청인에게 25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뤄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 IV. 요약 및 결론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사례를 통해 살펴본 초상권 침해 현황과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된 9,869건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이 92.9%를 차지하며, 초상권 침해 청구는 349건으로 3.5%에 불과하다. 초상권 청구 사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지만, 초상권과 다른 권리가 복합적으로 논의될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청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언론보도를 통한 초상권 침해 가능성은 여전히 중요한 법적 이슈이다.
- ② 초상권 침해로 인한 조정은 한 해 평균 49.8건 꼴로 이루어졌다. 2009년부터 인터넷 포털 기사가 조정대상으로 편입되면서 초상권 조정 사례가 2009년, 2010년 증가하다가 2011년에는 다시 감소했다. 초상권 침해에 대한 언론의 경각심이 높아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방송은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을 경우에 사람 얼굴을 모자이크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은 초상권에 대한 고려가 아직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 ③ 초상권 침해의 68.5%는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진이나 화면을 사용한 경우였다. 동의는 받았지만, 당사자가 허락한 범위를 넘어서 사용한 경우는 22.2%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자료화면 등을 통해 초상권을 침해한 경우다.
- ④ 청구 유형별 조정 현황을 보면,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가 87.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정보도가 신청된 경우는 11.5%였으며, 반론보도는 1.1%에 불과했다. 이는 초상권 침해를 청구하는 사람들이 피해 구제방안으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선호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정정보도와 반론보도가 초상권 침해로 인한 권리구제에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 ⑤ 손해배상이 활용되는 비율을 청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초상권과 음성권, 프라이버시권, 성명권 청구 조정사건에서는 손해배상청구 비율이 80~90%를 차지했다.

그러나 명예훼손에서는 그 비율이 31.7%에 불과했고 신용훼손의 경우에도 24.4%에 그쳤다.

- ⑥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조정액은 전체 손해배상 조정의 88.5%가 배상액 300만원 이하에서 정해졌다. 이 정도의 금액이 피해 구제에 적절한지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 ⑦ 초상권 조정 사례를 매체별로 살펴보면, 방송이 39.0%로 가장 많고 인터넷뉴스 서비스가 24.1%로 그 다음이다. 일간신문과 인터넷신문은 각각 12.9%와 12.0%를 차지했다. 신문의 초상권 침해 조정사례는 감소하고 있다.
- ⑧ 처리결과별 조정 현황은 신청인 취하가 45.8%로 가장 많았다. 조정성립은 33.8%,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및 조정 불성립은 각각 7.4%였다. 취하 사건 가운데 3/4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취하였다. 이는 신청인이 조정과정에서 피신청인과 정정보도, 반론보도, 사과, 기사게재, 손해배상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구제를 약속받거나 피해구제방안이 이행됐을 경우이다. 취하의 경우에 합의를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은 경우와 아예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 ⑨ 초상권 관련 조정 사례 7건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단순 과실로 인해 일어난 것이다. 이는 한국의 언론인들이 초상권 보호와 관련해 어떤 ‘분명한’ 인식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의 받지 않고’ 사용하는 초상이 당사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 ⑩ 언론인, 언론 관행, 언론제도 및 언론환경 측면에서 원인을 진단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론인의 문제. 우리 언론인들은 취재 보도와 관련한 법적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할 기회가 많지 않다.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선배들로부터 도제식으로 배운다. 언론인 훈련 과정은 여전히 전근대적이다. 취재보도와 관련한 기초 법지식이 취약하다. 대학의 언론정보학과 등에서 언론법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런 전공 수업은 입사 후에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기자로 뽑히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된다. 따라서 초상권 같은 문제는 저널리스트가 된 다음에 현장에서 부딪치며 배우는 것이 우리의 언론 현실이다. 취재보도와 관련한 법적 쟁점들을 연수나 강의 기회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언론 관행의 문제. 언론 관행은 언론인들이 저널리즘과 관련해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할 때 중요한 준거기준이 된다. 초상권과 관련해, 법적 자문을 구하기보다는 “그동안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었다. 동료나 타사 기자도 다 이렇게 하는데 큰 문제 있을까”하는 관행이 작동하고 있다. 뉴스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기사는 거두절미하고 보도한다. 어떤 사물과 이슈가 갖는 복잡한 특성도 고려하겠지만, 가급적 업계 내의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에 따라 단순화 시켜 관성적으로 보도한다. 세상은 21세기로 넘어온 지 오래됐는데, 부끄럽게도 우리 언론의 취재 제작 관행은 20세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관행은 보수나 진보 언론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또 방송도 신문에 못지 않다.

셋째, 언론 제도·환경의 문제(언론 매체의 증가, 언론의 경영상 압박, 시민의 권리 의식 강화). 인터넷과 모바일의 확산으로 언론 매체가 늘어나고 있다. 동시에 단편적이고 감성적인 영상물도 많아지고 있다. 초상권 같은 저널리즘의 ABC를 진지하게 고민할 겨를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뉴스 정보가 너무 많다보니, 저널리즘 원칙을 지킨 뉴스가 시장에서 별로 대접받지 못한다. 예전만 못해졌다. 매체의 증가는 개별 언론사에게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작동한다. 경영상 압박은 제작비 절감으로 이어지고 또 저널리스트를 ‘저널리즘 원리를 이해하는 비즈니스맨’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경영 압박을 받는 언론사일수록 언론인의 문제, 언론 관행의 문제를 찬찬히 살펴볼

여유가 없다. 과거 뉴스 소비자였던 일반 시민들은 권리의식을 강화해 더 엄격한 잣대로 언론을 평가하고 있다.

언론인의 문제, 언론 관행의 문제, 언론 제도·환경의 문제는 상호 부정적인 부머랭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품격 있는 저널리즘'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은 잘 보이지 않는다.

- ⑪ 다시 서론에서 논의한 나주 성폭행 사건 보도로 돌아가 보자. 오보로 판명난 최초의 그 젊은이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를 문제제기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라면 명백한 오보이기에 적절한 피해 배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의자 고모씨가 자신의 사진을 게재한 언론사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 그는 반사회적 행위를 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초상권 침해에 대해 적극적인 구제를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만의 하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심리를 요청해 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다.

## <참고문헌>

문재완 (2008). 언론법. 서울: 늘봄

박경신 (2008). "순수한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은 가치인가, 규범인가". 「창작과 권리」 51, p.4

유일상 (2000). 언론법제론, 박영사

이승선, 김연식 (2009).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와 문제점. 「사회과학연구」, 19, pp.65~94

언론중재위원회 2005년 연간보고서<[http://www.pac.or.kr/html/about/ab\\_report\\_list.asp](http://www.pac.or.kr/html/about/ab_report_list.asp)>

언론중재위원회 2006년 연간보고서<[http://www.pac.or.kr/html/about/ab\\_report\\_list.asp](http://www.pac.or.kr/html/about/ab_report_list.asp)>

언론중재위원회 2007년 연간보고서<[http://www.pac.or.kr/html/about/ab\\_report\\_list.asp](http://www.pac.or.kr/html/about/ab_report_list.asp)>

언론중재위원회 2008년 연간보고서<[http://www.pac.or.kr/html/about/ab\\_report\\_list.asp](http://www.pac.or.kr/html/about/ab_report_list.asp)>

언론중재위원회 2009년 연간보고서<[http://www.pac.or.kr/html/about/ab\\_report\\_list.asp](http://www.pac.or.kr/html/about/ab_report_list.asp)>  
언론중재위원회 2010년 연간보고서<[http://www.pac.or.kr/html/about/ab\\_report\\_list.asp](http://www.pac.or.kr/html/about/ab_report_list.asp)>  
언론중재위원회 2011년 연간보고서<[http://www.pac.or.kr/html/about/ab\\_report\\_list.asp](http://www.pac.or.kr/html/about/ab_report_list.asp)>  
언론중재위원회 30년사 (2012) <[http://www.pac.or.kr/html/data/dt\\_30y.asp](http://www.pac.or.kr/html/data/dt_30y.asp)>  
미디어오늘 2012년 9월 12일자, “성폭행 사건 언론사별 보도준칙 만들어야”  
조선일보 2012년 9월 1일자, “병든 사회가 아이를 범했다”  
노컷뉴스 2012년 9월 1일자, “무고한 시민 얼굴을 고종석으로... 조선일보 대형오보”

## 제1주제 지정토론

### ■ 한은경 (서울제2중재부 중재위원,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 전공 교수)

초상권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된 사건이 1991년 11월 뉴스위크지에 실린 사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스위크지에 '돈의 노예: 이화여대생들'이라는 설명과 함께 5명의 여대생 모습이 실렸습니다. 사실 5명의 여대생들이 졸업사진을 찍기 위해서 정장을 한 것인데, 이것을 놓고 한국의 과소비 문화라고 보도한 것이 문제가 되었고, 이로 인해 서울민사지법 항소2부에서 뉴스위크에게 6천만 원 손해배상을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초상권에 대한 논의가 촉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진이 의사소통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고, 페이스북에 하루 70억장의 사진이 올라오고, 프라이버시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자신의 사진을 무분별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상권 문제가 제기되니까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자신이 페이스북에 올리는 사진과 기자가 찍어서 올리는 사진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아이덴티티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사진은 비주얼 아이덴티티인데, 이 아이덴티티는 개인이 정할 수도 있고, 기자가 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자가 이 아이덴티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 때문에 초상권에 대한 시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민의 알권리, 언론이 알릴 권리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개인의 인권을 더 소중한 가치로 인정하는 것이 현행법의 정신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되지 않는 초상권의 범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공인의 경우는 초상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과 일반인의 기준을 어떻게 매겨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 신세계 정용진

회장과 디스패치 간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는데 정용진 회장의 손을 들어줬고, 1,500만 원의 손배를 판결했습니다. 정용진 회장이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손해배상 처리한 이 사건을 보고 공인과 일반인의 기준을 어떤 범위 내에 뒀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피의자의 경우 개인의 인격권을 존중해서 마스크와 모자를 씌워서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특히 최근 어린이 성폭행과 관련된 피의자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는 공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에 대해서도 한 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언론사의 채용 확보의 문제가 있고, 종편 이후에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서 전문기자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계약직,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 초상권의 문제가 앞으로 더욱 야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언론의 조직적인 문제, 채용의 문제 등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조속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 ■ 배재만 (한국사진기자협회 부회장, 연합뉴스 사진부 차장)

손영준 교수님께서 언론인 재교육이 제대로 안돼서 문제의 출발이 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입사한 지 18년이 됐지만 재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해 본 것이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언론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더군다나 2000년 이전 필름을 쓰던 시절, 거의 인터넷이 안 되던 언론환경에서는 초상권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손영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선배들의 도제식 교육의 바탕이 사실 거기서부터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문에 난 자기 사진을 보고 해당 신문사에 전화를 해서 항의해도 '아니 이거 뭐야?'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가 2005년 조정, 중재를 시작한 이후로 초상권에 대해 언론사, 신문사 스스로가 조심하고 있어 그 수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도 사

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데스크가 매번 언론중재위에 나가서 생각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생각과는 다른 중재금액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현실이 현장에 나가는 일선 취재기자들에겐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제가 있는 연합뉴스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신문에만 저희 사진이 나갔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인터넷이 시작되고 난 다음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다 전송이 돼서 그 사진들이 신문에 쓰이던 안 쓰이던 인터넷에 계속 남아있으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가 초상권 항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초상권 문제로 인해 언론중재위원회를 다녀오신 부장들 입장에서는 일선기자들에게 두 가지 사항을 요구하게 됩니다. 현장에 나가서 적당한 그림을 만들어오길 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초상권에 저촉 받지 않도록 하는 것. 짧은 시간 안에 찍고 다른 현장으로 넘어가야 되는 악순환이 되다보니 현장기자는 나름 억울한 점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초상권 문제가 개인의 인격권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는 언론사의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중재위에 갔다 오신 여러 신문 사진부장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사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갔다 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초상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건 충분히 공감했는데, 어떤 경중을 논하기 전에 신청이 있으면 일단 중재를 권고하시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성대 축제현장에 취재간 적이 있습니다. 성대에서 축제를 한다는 보도자료를 내서 기자가 성대 홍보실 직원과 함께 축제현장에 가서 마이크를 가지고 모여 있는 학생들에게 고지를 했습니다. “저희 연합뉴스에서 취재를 와있고 취재된 사진이 네이버 등에 실릴 수 있다.”고 고지했습니다. 현장에는 50~6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었고 편치볼 게임을 하는 장면을 취재하여 전송했는데 공교롭게도 편치볼 치던 여학생의 머리가 훑날리면서 좀 여성적이지 않게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언론중재위에 갔다 왔는데, 사실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대학 축제하면 흥겹고, 힘 있고 이런 젊은이들의 모습이 신문에 실릴 것을 예상했는데 중재위원님들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여자의 얼굴이 잘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본인이 싫다고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봅니다. 그런 시각의 차이가 매번 있습니다.

저희가 바람스케치를 나가서 두꺼운 옷을 입고 가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가급적 내지 않으려고 해도, 본인이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다고 요구를 하면 그것도 걸린다고 합니다. 또 태풍스케치를 나가서 저희는 사람이 떠밀려나가는 정도의 바람을 사진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바람에 중점을 두고 찍은 사진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중재위원들의 시각은 바람을 보지 않고 밀려가는 사람의 표정을 본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충분히 초상권에 대해 이해하려 해도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중재위원들이 보통의 경우'이 정도면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여기서 합의가 안 되면 민사로 가야되는데 민사로 가면 기본적으로 0이 하나 더 붙는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사실 민사로 가서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되면 그것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부장이 불러다니고, 당사자가 불러다니고, 편집국장까지 불러다니는 것보다 적게는 30~40만 원, 많게는 200~300만 원에서 해결보고 말지 하는 식의 자괴감 어린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한, 초상권 자체가 정식으로 보호받고 언론사에 의해서 심도 깊게 논의가 되려면 적절하고 구체적인 기준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비슷한 경우였는데 어떤 경우에는 중재금액이 30만 원 밖에 안 나왔는데 다른 경우에는 200만 원이 나오고 하는 식의 차등이 생기기도 하고 사건별로 보면 개인의 발언 그 자체만으로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저희는 아무리 봐도 표정이 이상한 것도 아닌데 단순히 자기가 신문에 공표되는 게 싫다거나 누가 봐도 얼굴도 제대로 안보일 정도의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돈으로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돈이 가까워서 아니라 젊은 기자일수록 예전의 선배들보다는 '초상권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정해진 규약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인위적으로 정도를 정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예를 들면 동아일보의 경우 2009년 6월에 6·10항쟁 기념 몇 주년일 때 집회현장인 서울광장에서 어떤 참가자가 경찰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사자가 동아일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언론중재위에서는 '그 사람의 요구대로 200만원으로 합의를 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아일보에서는 '집회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우리가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면서 회사 차원에서 대응을 해서 정식 재판으로 갔습니다. 민사에 갔는데 그 사람이 '인근에 직장이 있고, 퇴근하는 길에 어쩌다보니 휩쓸렸고, 내가 갈 길 가려는데 경찰이 막아서 항의하는 과정에 순간 포착된 사진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매체를 통해서 확인된 결과 그 사람이 처음부터 집회에 참가했었고 그 전에도 집시법 위반혐의로 잠깐 구류를 산 경우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소위 '시위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결국 동아일보가 승소했습니다. 전 아주 좋은 판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개된 집회현장에서의 초상권이 과연 보호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몇 년 전에 언론재단에서 초상권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사진기자는 저 뿐이었습니다. 2시간씩 이틀에 걸쳐 총 4시간을 했는데, 강사 중의 한 분은 전 중재위원이셨던 변호사님이었고, 다른 한 분은 현 중재위원이신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그나마 현 중재위원이신 변호사님은 방송기자 출신이어서 좀 이해를 많이 해주시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중재위원이셨던 그 분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분에게 시청광장에서 2002년 월드컵 때처럼 대규모로 많은 사람들이 붉은 옷 입고 응원을 하고 있는 전경을 찍었을 때 그 중에 정말 깨알같이 보이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나다'라고 할 때도 초상권 침해냐고 물었더니 그렇다는 겁니다. 그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현 중재위원님께서서는 '그건 정도의 차이가 있고 상황을 봐서 그 손해배상액은 1/n 형식으로 할 수도 있다. 그것은 정도의 경중을 따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중재위원님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편차가 심하다는 겁니다. 일정한 기준이 없다보니까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인위적으로 갖다 붙이는 형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중재위에 초상권 외에도 너무 많은 일들이 오기 때문에 사소하다고 생각하고 쉽게 '30~40만 원에', '100만 원에', '이건 짠 건 줄 아세요' 식의 생각이 배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성대 그 여학생에게 담당부장이 "어떻게 해서 100만원을 요구했냐"고 물었더니 언론중재위에 전화해서 상담해주시는 분께 "얼마정도 신청하면 되요?" 했더니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신청하면 될 겁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신청하면 그 정도 받고 끝날 겁니다'하는 식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005년 이후면 6~7년 정도 된 셈인데 처음 의욕과 달리 초상권 기준의 모호함이 언론사에게 '그래도 이나마 이 정도의 금액으로 해결되면 다행이지'하는 생각을 안겨주신 것은 아닌지, 혹은 중재위원 스스로도 딱히 적용시킬 규정이 없어서 그러시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도의 차이, 시각의 차이를 조금 더 면밀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은 비주얼한 지면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진이 필수불가결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문 산업이 많이 후퇴하다 보니까 사진기자 신입사원 채용을 하지 않아 사실 젊은 기자들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사진기자 숫자는 줄어드는데 면수는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 10년 전에는 하루에 1~2건 하던 것을 요즘은 5~6건을 해야 됩니다. 사진기자는 물리적으로 현장을 가야되기 때문에 이동하는 시간, 전송하는 시간을 합치면 엄청나게 일에 부담을 느낍니다. 이런 와중에 언론기자들이 조금 더 좋은 앵글이면서도 초상권에 저촉 받지 않는 것들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어서 안타까운 생각도 많이 듭니다. 초상권 부분을 언론중재위원회가 계속해서 연구, 정리하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상권 침해를 어떻게 안할 수 있냐는 질문에 동의 절차를 제일 많이 말씀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한 두 사람을 대상으로 찍었다 하면 당연히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의 절차라는 게 촬영을 하겠다는 동의, 배포를 하겠다는 동의, 배포를 어떻게 하겠다는 동의까지 받아야 완성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벚꽃 사진 스케치를 나가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모습을 찍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가서 동의를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서너 명만 있어도 '사진 좀 찍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흔쾌히 허락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촬영을 허락하는 사인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혹시라도 다른 게 있나 싶어서 안 합니다. 그래서 동의 절차를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중재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요즘 젊은 기자들은 초상권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도제식이 아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갔다 왔던’ 그런 예를 들어가면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신문사들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2 주제

초상권 침해에 관한 법리적 검토 및  
올바른 보도방법 고찰

김재형



# 초상권 침해에 관한 법리적 검토 및 올바른 보도방법 고찰

김재형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 I. 서론

1. ‘한 장의 사진’은 글로는 표현할 수 없는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다. 1972년 베트남전쟁 당시 9살의 베트남 소녀가 폭격으로 화상을 입고 벌거벗은 채 울부짖으며 도로 한복판을 달리는 장면을 찍은 유명한 사진이 있다. 이 사진을 찍은 AP통신 기사는 베트남전의 참상과 비극을 가장 사실적으로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풀리처상을 받기도 하였다.<sup>1)</sup> 얼마 전에 그 사진 속의 소녀가 성장하여 회고하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였다. 베트남전의 참혹한 모습을 알렸다는 점에서 그 기사는 칭송을 받았다.

그런데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위 보도에서 초상권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의

---

\* 이 글은 언론중재위원회가 2012년 10월 25일 “영상·사진 보도와 초상권”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기세미나에서 PPT 파일을 이용하여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대부분의 청중이 중재위원과 기자, PD 등 언론기관 종사자이기 때문에, 가급적 쉽게 설명하려고 하였는데, 나중에 인용 등을 추가하는 등을 수정하였다. 추후에 문헌 등을 보충할 예정이다.

1) 연합뉴스 2012년 6월 1일자 “베트남전 ‘네이팜 소녀 사진’ 탄생 40주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5633712>).

문이 들기도 한다. 사진이나 영상이 없이는 신문이나 방송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신문과 방송에서 사진이나 영상은 필수불가결한 위치를 차지한다.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사진이나 영상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초상권에 관한 분쟁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2. 초상권은 인격권의 내용을 구성하는데, 인격권이라는 용어가 대법원 판결에서 처음 등장한 것은 1980년이다.<sup>2)</sup> 그리고 하급심 판결에서 초상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이 1982년이다.<sup>3)</sup> 따라서 1980년대에 비로소 초상권이 법적 권리로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광고에 의해서 초상권이 침해되는 경우 초상권 또는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를 받는다. 법원의 판결에서 퍼블리시티권이란 용어는 1995년에 처음 사용되었다.<sup>4)</sup>

지난 10여년 동안 법원의 판결에서 초상권에 관한 분쟁이 빈번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도 신정아의 누드 사진이라고 하면서 게재한 사진과 관련하여 1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도 있었고, ‘FT아일랜드’의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도 나왔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명예훼손에 관한 분쟁 다음으로 많이 문제되는 것이 초상권에 관한 분쟁이다. 초상권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규율되다가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언론피해구제법’이라 한다)에서는 초상에 대한 권리에 관해서도 명시적인 규정을 두게 되었다.

3. 언론보도가 사람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초상권을 보호해야 할 것인지 문제된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두 개의 중요한 권리, 즉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

---

2)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883 판결(공 1980, 12586).

3) 서울중앙지방법원 1982. 7. 21.자 82카19263 결정(국내외언론관계판례집 제1집, 1982, 157면)

4) 서울지방법원 1995. 6. 23. 선고 94카합9230 판결(하집 1995-1, 323). 당시 필자는 서울지방법원 판사로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소셜 이휘소’에 대한 출판금지가처분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작성하였는데, 그 판결에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인지가 법원의 재판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에서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다. 이것은 결국 ‘이익형량(利益衡量)’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데, 보도의 필요성이 더 큰가 아니면 인격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큰가를 저울질하여 어느 쪽이 무겁고 어느 쪽이 가벼운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 결론에 따라 어떤 경우는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책임을 인정하고, 어떤 경우는 초상권 침해로 인한 책임을 부정하기도 한다.

실제 사건에서 이익형량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어 이른바 흉악범에 관한 보도를 생각해보자. 예전에는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한 상태로 보도하는 관행이 있었다. 요즘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흉악범의 얼굴을 신문과 방송에서 공개하는 추세이다.<sup>5)</sup> 이와 같이 언론에서 범인의 모자와 마스크를 씌운 상태에서 보도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얼굴을 그대로 공개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 자체가 언론에 의한 초상권 침해에 관한 이익형량의 기준을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는 방식이 언론사별로 차이가 있는 것을 보면, 이 문제가 아직 정돈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범인으로 지칭된 사람의 몸은 다 보여주면서 얼굴만을 가리고 보도하면 언론사는 면책되는가와 같은 문제도 있다.

4. 여기에서는 초상권의 개념, 위법성, 구제수단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바람직한 보도방법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 세미나에는 중재위원과 기자, PD 등 언론기관 종사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초상권에 관한 법리를 간결하게 다루고자 한다.

## II. 초상권의 개념과 근거

### 1. 초상권의 개념

---

5) 얼마 전에 한 언론사에서 흉악범의 사진을 잘못 내보내 정정보도를 하기도 하였다.

초상권은 초상에 대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초상’에 ‘권(權)’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초상권이라고 한 것이므로, 초상을 권리로서 보호한다는 뜻이다. 초상은 “사진, 그림 따위에 나타낸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을 말한다.<sup>6)</sup> 따라서 초상권은 사진 등에 나타난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을 권리로서 보호하는 것이다. 사람한테서 재산을 빼앗는 경우, 법은 그 재산을 보호해준다. 이와 같이 재산을 보호해주는 권리를 재산권이라고 한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침해한다든지, 생명을 박탈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신체에 관한 권리 또는 생명에 관한 권리를 법적인 권리로서 보호해왔다. 초상권도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 법적인 권리로서 보호를 받게 되었다.

언론피해구제법에서 인격권에 관하여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인격권은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 초상, 성명, 음성, 대화 등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격권 개념은 독일법에서 사용되던 것을 우리나라에서 수용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인격권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프라이버시권’이나 ‘명예훼손’으로 해결한다. 미국에서는 ‘프라이버시권’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 초상권이나 성명권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의 유형으로 되어 있다.

독일에서 일반적 인격권이 승인된 것은 1950년대이다. 이때 ‘인격’은 일반적인 용어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보통 인격이 훌륭하다느니 그렇지 않다느니 하는 말을 하는데, 이 경우에 인격은 훌륭한 품성을 뜻하는 말이다. 그러나 인격권이라고 할 때에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진 권리를 통칭하는 의미를 갖는다. 모든 사람은 인격권을 가진다. 흉악범이나 사형수라고 하더라도 인격권을 가진다. 그 사람이 좋은 품성을 가졌는지 나쁜 마음씨를 가졌는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사람이 자기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이익을 법률로서 보호하는 것이 인격권이다.

얼굴 등 사람의 모습은 당연히 초상권으로 보호받는다. 몽타주, 소묘, 풍자화, 만화, 인형 등도 초상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1997년 TV드라마 ‘입격정’의 주인공 정홍채의 모습과 비슷한 이미지를 광고에서 무단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정홍채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였다.<sup>7)</sup> 그리고 독일에서 축구선

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7) 서울지방법원 1997. 8. 1. 선고 97가합16508 판결.

수의 뒷모습도 초상권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sup>8)</sup> 반드시 얼굴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외관상의 특색을 드러내는 경우라면 초상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초상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초상을 통해 인물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평소에 그 인물을 알고 있는 주위사람들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또한, 피해자의 얼굴을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경우라도 사진에 대한 설명 등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면 충분하다. 1998년에 대법원 판결에서 얼굴 윤곽에 대해 초상권 침해를 인정한 적이 있다. 당시 방송에서 원고의 성명 대신 가명을 사용하고 화면은 원고의 우측에서 조명을 투사하여 벽(셋팅)에 나타나는 그림자를 방영하였으나 그 그림자에 원고의 우측 옆모습, 즉 눈, 코, 입 모양과 머리 모양이 섬세하게 나타나고, 목소리는 변성처리하지 않고 원고의 육성을 그대로 내보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및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하였다.<sup>9)</sup> 따라서 초상권이 인정되는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TV 등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고 본다.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 2. 초상권의 근거

초상권의 근거는 우선 헌법 제10조를 들 수 있다. 이 규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8) BGH NJW 1979, 2205.

9) 서울고등법원 1996. 2. 2. 선고 95나25819 판결(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4집, 243면). 대판 1998. 9. 4. 96다11327(공 1998, 2377)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을 판결을 지지하였는데, 초상권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사생활의 비밀을 무단 공개한 것이라고 하였다.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 명예권, 성명권 등을 포괄하는 인격권을 의미한다.<sup>10)</sup> 따라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sup>11)</sup>라고 할 수 있다.

민법은 제750조에서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 규정을 두고, 제751조 제1항에서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하여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초상권이 불법행위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또한 언론피해구제법 제5조 1항에서 “... 타인의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 라고 규정함으로써 초상에 관한 권리를 인격권 개념으로 포섭하고 있다. 따라서 초상권은 이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Ⅲ. 초상권의 내용과 보호범위

초상권의 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 번째는 ‘촬영·작성 거절권’으로,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를 말한다. 두 번째는 ‘공표거절권’으로,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이다. 피촬영자가 승낙하여 촬영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내용인 공표거절권의 침

10) 인격권에 관한 논의에서 일반적 인격권과 개별적 인격권을 구분하고,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별적인 인격권이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일반적 인격권과 개별적 인격권의 구분은 독일 법에서 유래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용어를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독일에서는 성명권이나 초상권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개별적 인격권이라고 지칭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관한 개별적인 법률이 없기 때문에 독일과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11)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해에 해당한다. 세 번째는 ‘초상영리권’으로,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로서, 퍼블리시티권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대법원 판결에서 초상권에 관하여 상세히 판단을 한 것은 2006년이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집 54-2, 민 37)의 사안은 다음과 같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보험회사 직원이 위 피해자들의 장해 정도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촬영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피해자들이 보험회사 직원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다. 대법원은 보험회사 직원이 위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촬영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초상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에 따라 개인은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 그러므로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한편 광고에서 유명인의 이름이나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한다. 서울지방법원에서 1995년 6월 23일에 물리학자 이휘소를 모델로 한 소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등의 출판금지 가처분 사건(이휘소 사건)에서 소설에 이휘소와 그 가족의 사진을 게재한 것이 문제되었다.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그 후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판결이 많이 나왔다. 소설가 이효석 사건에서는 사진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퍼블리시티

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은 주로 광고에서 주로 문제된다. 다만 신정아 사건에서 1심 법원이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는데,<sup>12)</sup> 언론보도로 인해 상업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표현하고 있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판결은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광고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보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은 주로 광고에서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퍼블리시티권에 관하여 더 이상 다루지 않는다.<sup>13)</sup>

## IV.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

### 1. 개설

초상권 침해가 어떠한 경우에 허용되고 어떠한 경우에 허용되지 않는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라고 한다.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에 관해서는 세 가지로 구분하여 다루고자 한다. 첫 번째는 피해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 촬영이나 공개 등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하면 초상권 침해가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공적 인물의 문제로서 정치인 등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촬영이나 보도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 2. 초상권자의 동의

언론사는 초상권자의 동의를 얻어 그의 사진을 촬영하여 보도할 수 있다. 언론피

---

12) 1심 법원은 초상권 침해 등을 인정하여 1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였으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8천만원으로 조정결정을 하여 종결되었다.

13)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느냐 아니냐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관한 법안이 나오기도 하였다. 이에 관하여 저작권법에 규정하자는 법안을 마련하기도 했는데, 필자는 저작권법에 이를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고 민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상세한 것은 김재형, 언론과 인격권, 박영사, 2012 참조.

해구제법은 제 5조에서 언론 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사유 중의 하나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를 들고 있다. 따라서 초상권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초상권자의 동의에는 한계가 있는데, 그 동의가 사회상규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판례를 보면, 피해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는 사례들이 다수 있다. 이를 분류해보면, ①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여 보도한 경우 ② 독자적으로 입수한 사진을 동의 없이 게재한 경우 ③ 촬영에 동의한 경우라도 본인의 예상과 다른 방법으로 사진이 공표되는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언론에서 사진을 보도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 사례를 들어보자. 1980년대에 한 여성잡지가 미스코리아 출신인 연예인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 기사를 게재하면서 원고가 선전용으로 배포, 판매한 사진영상집의 사진 중 비교적 선정적으로 보이는 2매의 사진을 무단으로 함께 게재했다. 법원은 독자들이 이 사진을 기사의 일부로 인식하여 원고의 행실이 좋지 못하다는 강한 인상을 받을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sup>14)</sup> 법원은 독자들이 어떻게 인식했느냐를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초상권 침해가 문제된 유명한 사건은 이른바 ‘돈의 노예들’ 사건이다. 1991년에 뉴스위크 잡지가 “너무 빨리 부자가 되다(Too Rich Too Soon)”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이대 정문 앞에서 여대생 5명이 걸어 나오는 천연색 사진을 삽입하였다. 그 사진 아래에는 “돈의 노예들: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Slaves to Money’: Students at Ewha Women’s University)”이라는 부제를 붙였다. 이에 대하여 위 사진에 나오는 3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을 인정하여 1인당 3천만원씩, 총 9천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하였다.<sup>15)</sup> 먼저 초상권 침해에 관해서는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원고들의 얼굴

14)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7. 25. 선고 88가합31161 판결(법률신문 1989. 9. 21.자, 8면).

15)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7. 8. 선고 92가단57989 판결.

사진을 찍고 이를 잡지에 게재하여 배포함으로써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돈의 노예들”이라는 부제까지 달아 놓아, 그 사진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최소한 그 기사에서 나오는 부정적 측면 또는 위 부제에서 의미하는 내용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러한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였다. 그 후 2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을 1천만원씩 줄여서 1인당 2천만원씩, 총 6천만원을 인정하였다.<sup>16)</sup> 이 사건에서 초상권과 함께 명예훼손이 인정된 것이지만, 당시의 손해배상실무를 감안할 경우 위자료 액수가 상당히 많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원고들이 미국에서 소를 제기했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어 훨씬 많은 손해배상액이 인정됐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sup>17)</sup>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5. 19. 선고 2009가합311 판결(각공 2009, 1007)에서는 피고 방송사가 행동장애를 가진 초등학생을 촬영한 방송자료를 폐기하기로 약정하였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피촬영자 측의 동의 없이 뉴스 프로그램 등에서 촬영분을 다시 방송한 것(제목: “못된 아이 매인가? 치료인가?”)이 문제되었다. 법원은 “피고는 원고들의 모습이 담긴 (명칭 1 생략) 방송자료를 폐기하기로 한 원고 1 및 소외인과 사이에 체결한 약정을 위반하였고, 더구나 원고들의 동의 없이 (명칭 3 생략) 등 3개 프로그램에서 원고들의 촬영분을 다시 방송함으로써 위 원고들의 초상권, 명예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을 한 경우에도 동의의 조건을 어기고 보도한 것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서울고등법원 1996. 6. 18. 선고 96나282 판결(국내언론관계판례집 제5집 157면)에서는 호화 웨딩드레스 대여업자들의 횡포를 고발하는 뉴스에 그와 무관한 사람(임수경)의 결혼식 장면을 자료화면으로 방송한 것에 대하여

16)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3. 30. 선고 93나31886 판결(국내언론관계판례집 제3집, 180면).

17) 이 판결은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있는데, 돈의 노예들이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인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은 사실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의견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허위의 보도에 대해서만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공중에게 잘못된 인상을 주는 경우를 프라이버시 침해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명예훼손, 명예감정 손상 및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이 1997년에 한 이른바 ‘공포의 통과의례’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 판결은 기자가 피촬영자들로부터 사진의 촬영에 동의를 받았으나 방송의 조건을 지키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sup>18)</sup> 사안은 다음과 같다. 연대 성악과 학생인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에 자신들이 식당에서 한 여흥장면과 식사장면을 방송하는 것을 승낙하였다. 당시 원고들은 신세대 대학생들이 신입생 환영회에서 생기발랄하고 재미있고 즐겁게 노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방송할 것을 조건으로 승낙하였다. 피고회사의 기자인 피고 B도 이를 약속하였다. 그런데도 피고 B는 1997. 3. 16. 원고들을 취재한 장면을 방송하면서 대학생이 신입생환영회에서 술을 많이 마셔 숙젓다는 사실, 고대 경영학과 학생들의 막걸리 사발식 장면, 나이트클럽의 무대 장면, 술에 취한 학생들이 길바닥에 쓰러지거나 여관으로 업혀가는 장면, 신촌의 유흥가 밀집장면, 지방대학 학생들의 철야음주형태, 신입생환영회에서 숙진 학생과 관련된 고소장 등과 편집하여 ‘공포의 통과의례’ 라는 제목으로 방송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기자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 1인당 200만원에서 6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위 방송은 시청자로 하여금 원고들을 포함한 연대 성악과 학생들이 마치 퇴폐적인 유흥에 물든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 것처럼 인식하게 하였으며, ② 피고 C는 원고들 중 일부가 나이트클럽 화장실에서 대화하는 장면을 그들의 동의 없이 촬영하고 피고 B가 그들의 모습 및 음성을 그대로 방송함으로써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한 원고들의 주위사람들이 쉽게 원고들을 알아볼 수 있게 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및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의 결론은 타당하지만, 위 ① 부분은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및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공중에게 잘못된 인상을 주는 행위에 해당할 것이다.

초상권에 관하여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

1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언론중재 1997년 가을호, 165면).

판결에서는 유방확대수술을 받고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원고가 방송사에 대하여 인터뷰를 하면서 촬영을 함으로써 방송에 동의하였으나, 원고가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을 한 경우에 사생활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 이 판결은 사생활 침해에 대하여 판단한 것으로, 이 판결의 논리는 초상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그 후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당시 예정한 방법과 달리 방송된 경우에는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는 판결들이 나왔다.<sup>19)</sup>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당시 예정한 방법과 달리 또는 방송사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상태로 방송된 경우에는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 3.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관한 보도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에서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공개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더라도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은 사생활 침해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초상권 침해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인 대해서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위법성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언론피해구제법 제5조 제2항은 ‘언론 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것은 명예훼손에 대한 것으로 볼 수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9. 선고 2006가합36290 판결(각공 2007, 141); 의정부지방법원 2011. 10. 20. 선고 2011나6848 판결(각공 2011, 1479).

있으나, 초상권 침해의 경우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면책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4. 공적 인물의 문제

공인, 즉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그 사진이나 영상을 보도하더라도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법성이 없다고 한다. 공적 인물은 ① 공개를 원했거나 공개에 동의했다는 점, ② 그의 존재나 직업이 이미 공적 성격을 띠는 점, ③ 언론은 대중에게 공익에 관한 정당한 관심사항으로 된 것을 알릴 특권을 헌법상 보장받는다라는 점을 이유로 프라이버시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고위직 공무원, 영화배우, 스포츠 스타 등을 공적 인물이라고 한다. 흉악범의 사진을 보도할 수 있는지 논란이 많다. 공인 이론은 미국에서 유래한 것인데, 고위직 공무원 등을 자발적 공적 인물이라고 하고, 흉악범 등을 비자발적 공적 인물이라고 한다. 실제로는 공인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는 심지어 범죄 피해자를 공인이라고 한 판결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인의 사전적 의미는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한다.<sup>20)</sup> 따라서 고위직 공무원,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공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유명 연예인을 공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관념이 적지 않다. 따라서 공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유명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나올 수 있다. 흉악범이 어떻게 공인이나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공인에 속한다고 본다면 일상 용어와 법률용어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흉악범을 공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어법에 어울리지 않는다. 물론 공인은 법률용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상용어와 달리 이해할 수도 있으나, 가급적 일반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공인이나 유명인의 경우에는 그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하는 것이 넓게 허용된다. 이것은 보도에 관한 것이고 광고의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문제가 발생하여

20)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전혀 다른 논리가 전개된다.

한편 공인이나 유명인의 경우에도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최근 프랑스 잡지에서 영국 왕세손비인 케이트 미들턴에 관한 사진을 보도한 것이 화제가 되었다. 영국 왕실은 사진의 공개를 금지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프랑스 낭테르 법원은 2012년 9월 18일 프랑스 잡지 ‘클로제’ 측에 노출 사진의 추가 보도와 배포를 금지하고, 24시간 내에 모든 사진 파일을 왕실에 돌려주는 한편 2000 유로(약 29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잡지사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하루에 1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공인이나 유명인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사적인 모습, 특히 아주 내밀한 모습을 찍어서 보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 V. 초상권에 대한 구제수단

###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1) 일반불법행위책임

초상권 침해에 대하여 여러 가지 구제수단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정하고 있다. 또한 언론피해구제법 제30조 제1항은 언론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것은 언론피해의 경우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민법 제750조에서 도출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한 취지이다. 따라서 언론에 의한 초상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

위책임의 근거로는 언론피해구제법 제30조와 민법 제750조, 제751조를 들 수 있다.

## (2) 사용자책임과 공동불법행위책임

기자나 PD가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경우에 그 사용자인 언론사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이것을 사용자책임이라고 하는데, 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에서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912 판결(공 2008, 215)에서는 외주제작사가 무단촬영한 장면에 관하여 방송사업자가 피촬영자의 방송 승낙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피촬영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별도의 화면조작 없이 그대로 방송한 경우, 피촬영자의 초상권 침해에 대하여 외주제작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 판결의 사안을 간략하게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원고 2는 2005. 8. 2. 건국대학교병원(이하 ‘건대 병원’이라 한다)에서 임신 29주 만에 원고 1 등 세쌍둥이 미숙아를 출산하였는데, 그 중 2명은 출생 직후 사망하고, 원고 1만이 생존하여 2005. 9. 말경까지 위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요양을 받았다. 원고 3은 원고 2의 남편이자 원고 1의 아버지이다. ② 피고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이하 ‘피고 건대’라 한다)는 건대 병원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2는 건대 병원의 홍보팀장이다. 피고 한국방송공사(KBS)는 텔레비전 방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매주 화요일 자정에 ‘병원 24시’라는 프로그램(이하 ‘병원 24시’라 한다)을 방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4는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직원으로서 병원 24시의 프로듀서(연출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제이알엔(이하 ‘피고 제이알엔’이라 한다)은 방송프로그램 등을 제작·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박준식은 피고 제이알엔의 직원으로서 병원 24시 중 ‘1,000g 아가들의 전쟁 - 세쌍둥이 미숙아’ 편(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제작에 있어 촬영 및 연출을 담당한 사람이다. ③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2005. 7. 1. 피고 제이알엔과 사이에 위 피고로부터 병원 24시를 편당 18,264,000원에 제작·납품받기로 하는 내용

의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④ 피고 제이알엔은 “소외 2 부부와 그들의 세쌍둥이 미숙아 및 건대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의료진을 주요 출연진으로 하여, 위 세쌍둥이 미숙아의 삶에 대한 본능과 그들을 온전히 성장시키기 위한 젊은 부부 및 의료진의 노력 등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해 본다.” 라는 기획의도 하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결정하고, 피고 2 등의 협조 아래 피고 6으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05. 9. 30.까지 사이에 건대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소외 2와 그녀의 남편인 소외 3, 이들 부부의 세쌍둥이 미숙아 등에 대해 촬영을 하도록 하였다. ⑤ 피고 한국방송공사가 매주 화요일 방송한 “병원 24시” 프로그램 중 “1,000g 아가들의 전쟁 - 세쌍둥이 미숙아” 편(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 이라 한다)은 소외 2가 세쌍둥이 미숙아를 출산하고, 그로부터 약 보름간에 걸쳐 위 미숙아들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겪게 되는 여러 상황 및 소외 2 부부의 생활모습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심판결<sup>21)</sup> 중 초상권 침해에 관한 판단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 6은 원고 1의 친권자인 원고 2, 3의 동의 없이 제1, 2장면을, 원고 2의 동의 없이 제3장면을 각 촬영하여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되게 함으로써 원고 1, 2의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6과 그 사용자인 피고 제이알엔은 각자 이로 인하여 원고 1, 2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이 사건 제작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피고 제이알엔의 제작현장에 수시로 입회하는 등 병원 24시의 제작에 관여할 수 있고, 제작이 완료된 병원 24시를 검수하여 불충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피고 제이알엔에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병원 24시에 대한 방송권자 내지 방송의 주체로서 병원 24시에 대한 최종적인 편집권한이 있으므로, 피고 4로서는 병원 24시의 프로듀서로서 병원 24시를 통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영하게 된 이상 이 사건 프로그램이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제작계약에 의하면 병원 24시와 관련하여 피고 제이알엔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피고 제이알엔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 한국방송공사 및 피고 제이알엔의 내부적인 구상관계를 정해 둔

21) 서울고등법원 2007. 7. 25. 선고 2006나80294 판결.

데 불과하다). 이에 위반하여 만연히 이 사건 장면이 포함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영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 4와 그 사용자인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이로 인한 위 원고들의 초상권 침해에 대하여 피고 제이알엔, 피고 6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프로그램이 공익목적에 지향하여 제작·방영한 것이라 하여도,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이 사건 프로그램 중에 위 원고들의 초상을 넣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필연성이나 그 초상을 촬영함에 있어 미리 위 원고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배제해도 용인될 만큼의 무슨 긴급성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전혀 공적인 존재가 아닌 위 원고들에 대하여 단지 프로그램의 공익성만을 내세워 그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④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영 목적이 주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등 공익을 위한 것이고, 이 사건 장면이 비교적 단시간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내용 역시 부정적인 면을 포함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 촬영에 앞서 원고 3이 원고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장면의 촬영을 담당한 피고 6에게 원고들이 처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 장면의 촬영을 거절하는 뜻을 분명히 밝힌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할 때, 원고 1, 2에 대하여 각 7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피고 한국방송공사 외 2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지지하면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 또는 각하하였다.

“방송법 제7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이 방송사업자에게 강제되고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외주제작사에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의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외주제작사와 체결한 제작계약에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권이 방송사업자에게 귀속하고 납품된 방송프로그램의 최종적인 편집권한이 방송사업자에게 유보된 사정 아래에서 방송사업자가 제작과정에서 외주제작사에 의하여 무단촬영된 장면에 관하여 피촬영자로부터 그 방송의 승낙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촬영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별도의 화면조작(이른바 모자이크 처리 등) 없이 그대로 방송하게 되면 외주제작사와 공동하여 피촬영자의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방송사업자의 책임은 그가 방송의 주체로서

자신의 독립적 판단 하에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 납품된 상태 그대로 방송한 데 기초한 것이므로 그 제작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사이의 법률관계가 민법상의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인지 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인지 여하에 따라 그 책임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 판결은 외주제작계약에 따라 제작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송사의 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선례로서 의미가 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외주제작계약에 따라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제이알엔의 제작현장에 수시로 입회하는 등 “병원 24시” 프로그램의 제작에 관여할 수 있고 제작이 완료된 “병원 24시” 프로그램을 검수하여 불충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이알엔에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병원 24시”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권자 내지 방송의 주체로서 “병원 24시”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적인 편집권한이 있고, 피고 2로서는 “병원 24시” 프로그램의 프로듀서로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영하게 된 이상 그 프로그램이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에 위반하여 만연히 원심 판시 제1, 2, 3장면이 포함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영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피고 2와 그 사용자인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이로 인한 원고 1, 2의 초상권 침해에 대하여 제이알엔 및 피고 3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대법원은 피고 2가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피용자로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과 관련하여 피촬영자의 승낙 등 초상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위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이러한 과실책임은 피촬영자의 승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면 편집권에 기하여 문제될 수 있는 장면을 삭제하거나 피촬영자의 동일성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화면조작 등으로 초상권 침해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피고 한국방송공사에게 부여되어 있음을 전제한 것으로서 피고 2에게 이행이 불가능한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방송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을 규정한 방송법 제72조 제1항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은 외주제작사가 무단촬영한 장면에 관하여 방송사업자가 피촬영자의 방송 송낙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피촬영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별도의 화면조작 없이 그대로 방송한 경우, 피촬영자의 초상권 침해에 대하여 외주제작사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하였다. 방송사가 외주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외주제작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방송사는 지지 않는다고 약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내부관계에서 적용되는 것이고, 이는 피해자가 방송사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3)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책임

인터넷에 의한 초상권 침해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명예훼손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기준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자살을 한 여자의 어머니가 인터넷에 딸의 남자친구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 네이버 등에 이에 관한 기사 및 댓글이 게재되었다. 피해자가 네이버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은 이른바 포털이 언론인가 하는 논의를 촉발시켰는데, 대법원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자신의 컴퓨터에 보도매체의 기사를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의 일부를 선별하여 게시한 경우, 그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결하였다. 보도매체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자신의 자료저장 컴퓨터 설비에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였고 그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단순히 보도매체의 기사에 대한 검색·접근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와는 달리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가 보도매체의 특정한 명예훼손적 기사 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전파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댓글에 관해서는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했다. 즉, ①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② 위 사업자가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③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 위 사업자가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위 사업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피해자가 삭제요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 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위 판결은 명예훼손에 관한 것인데, 초상권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초상권을 침해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선별하여 게시하는 경우에는 언론과 마찬가지로 초상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질 것이다. 또한 일반인들이 인터넷에 사진을 올려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사업자가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사업자가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발생할 것이다. 아직 이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이 문제는 조만간 중요한 문제로 등장할 것으로 생각한다.

(4)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가 있다. 대법원은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다.<sup>22)</sup>

정신적 손해의 배상은 위자료로 나타난다.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계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여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위자료이다.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해서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sup>23)</sup> 법원의 판결에서

22)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23)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57 판결(공 1988, 573);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위자료를 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는 당사자 쌍방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자산상태, 가해의 동기, 가해자의 고의·과실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초상권 침해의 경우에 재산적 손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언론피해구제법 제30조 제2항은 손해액의 산정에 관하여 법원은 언론 등에 의한 인격권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언론에서 원고에 대해 성로비 의혹을 제기하면서 원고의 알몸 뒷면을 담은 컬러 사진을 일간신문에 게재한 사건에서 손해배상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였다.<sup>24)</sup> 그러나 초상권 침해의 경우에는 100만원 정도의 낮은 금액이 손해액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다. 초상권에 관한 사례를 모아 유형별로 분류하여 손해배상액이 얼마나 인정되었는지를 정리하여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언론피해구제법을 제정할 당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언론피해에 대하여 금지청구,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다양한 구제수단이 있다. 이에 반하여 미국에서는 금지청구나 반론보도청구는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해서 인정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는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손해배상은 여러 구제수단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여러 구제수단이 있는 상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가적으로 도입하면 표현의 자유를 좀 더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것이다.

---

판결(공 1999, 998);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공 2003, 211);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7014, 47021, 47038 판결(공 2006, 313).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을 8천만원으로 조정결정하였다.

## 2. 금지청구권

초상권 침해에 대하여 금지청구권이 인정된다. 판례는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sup>25)</sup> 언론피해구제법 제30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론사 등[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가리킨다]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언론사 등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30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은 인격권이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이라면, 금지청구권은 인격권의 침해를 미리 예방하는 사전적 구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제 또는 검열제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대한 금지청구권이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것인지 문제되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정한다.<sup>26)</sup>

그러나 금지청구권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 억제는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금지가 허용된다. 그와 같은 표현행위는 그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에 우월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고, 또 그에 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되기 때문이다.<sup>27)</sup>

언론보도로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보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금지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5) 대판 1996. 4. 12, 93다40614, 40621(공 1996, 1486).

26) 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3헌가13, 91헌바10 결정(헌집 8-2, 212);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바36 결정.

27) 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공 2005, 391).

### 3.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언론피해구제법은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정정보도는 언론의 보도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이고(제2조 제16호), 반론보도는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이고(제2조 제17호), 추후보도는 언론 등에서 범죄혐의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는 보도나 공표가 있을 후 추가적인 보도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제수단은 허위의 보도를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많이 이용되지만, 초상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이용될 수 있다. 가령 사진을 실으면서 엉뚱한 내용의 기사를 쓴 경우에 그 사진이나 기사에 관하여 반론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 VI. 결론 - 올바른 보도 방법

1. 그렇다면 언론의 올바른 보도 방법이 무엇인가? 이에 관해서 필자가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것은 언론인이 찾아야 할 내용이다. 법적 관점에서 선블리 올바른 보도 방법을 제안할 경우에 생생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도하는 데 장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위에서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초상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차원에서 간략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언론보도에 의한 초상권 침해여부를 판단할 때 사진이나 영상을 보도할 필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와 초상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법원에서는 결국 사진 등의 보도의 이익과 초상권 보호의 이익을 형량하는 방식으로 초상권 침해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진 등을 보도할 필요성이 큰 것인지, 초상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큰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진기자나 편집부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언론사에서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다.

그리하여 피촬영자의 동의를 얻고 동의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동의를 얻을 수도 있지만, 사진 등을 촬영한 이후에 동의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매순간 동의를 얻은 다음에 촬영을 한다면 생생한 사진이나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동의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명시적, 묵시적 동의 이외에 피촬영자가 실제로 동의한 것이 아니라도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추정적 동의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언론 현장에서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공적 인물이나 유명인에 관한 보도의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다. 또한 공적 인물이 아닌 사인의 사진 등을 보도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관한 보도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다. 그러나 유명인에 관한 보도도 지나치게 내밀한 사생활에 해당하는 장면을 보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국 사진이나 영상을 보도할 필요성이 큰 것인지, 아니면 초상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보도를 해야 할 것이다.

2. 언론이 사법부의 법적 판단에 대하여 비판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언론 보도도 법적인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은 모두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지난 30년 동안 어떤 경우에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가 인정되고 어떤 경우에 인정되지 않는지에 관하여 판례가 축적되어 왔다. 언론피해구제법에서는 판례를 수용하여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 문제에 관하여 상세한 규범을 규정화하였다. 이제 인격권은 우리의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기초적인 권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도 인격권을 인식하면서 취재나 보도 관행을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인격권은 언론에 대한 하나의 도전일 수 있지만, 이에 슬기롭게 대응하는 것은 우리 언론이 한 단계 도약의 기회를 가져올 것이다.

## 제2주제 지정토론

### ■ 김정탁 (서울제6중재부 중재위원,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 전공 교수)

요즘 우리 언론에서 '흉악범의 초상을 보호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이고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호해야 된다'는 조항과 헌법 제21조 '언론자유와 출판 자유를 보장한다'는 두 원칙이 서로 충돌하는데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제21조를 강조하면 흉악범, 심지어 일반범죄자라 할지라도 얼굴을 공개해야 하고, 만약 제10조를 강조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 판단은 재판관의 의식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의회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법도 제정할 수 없다'라는 것과 수정헌법 제6조의 '피고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항상 대법원에서 논란이 되고, 이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둘 것인가가 미국 언론학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미국의 재판을 보면 사진을 못 찍고 스케치 처리하는 것은 수정헌법 1조보다는 수정헌법 6조에 무게를 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어떤 입장을 말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예전 자유당 시절의 박인수 사건이라는 대단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 법대생을 사칭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를 사칭하여 수많은 여대생을 농락한 사건입니다. 당시에 희대의 관심사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기석 씨의 '자유부인'이라는 소설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권순영 판사는 판결에서 '법은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정조만을 보호한다'며 박인수 피고인을 무죄 석방했습니다. 저는 이 문

제도 '정조'를 '인격'으로 바꾸어 '법은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인격만을 보호한다'고 말하면 이것이 나름대로 현직 언론인들이 흉악범의 사진을 공개할 건가 말건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 박도윤 (CJ E&M 법무팀 부장)

'초상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려면 초상을 통하여 인물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주위 사람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초창기엔 제작진들이 얼굴을 가리는 것도 많이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는 것이 방송영상의 퀄리티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법무팀에서는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얼굴뿐만 아니라 상반신, 하반신까지도 모자이크를 하도록 계도를 하였는데, 제작진도 처음에는 거부감을 나타내다가 분쟁 건이 다수 발생하다 보니 지금은 많이 이해하고 가이드라인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 저희 프로그램 중에서 정선 카지노 도박 중독으로 인해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노숙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취재를 하게 되었는데 사우나 탁자에 있는 사람의 상반신을 가리고 하반신이 노출되었습니다. 같이 노숙 생활을 하고 있던 옆 사람이 그 방송을 보고 언론중재위에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을 하여 그 사람이 구제받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조언했던 사람도 또 다시 조정 신청을 했던 경우가 있는데, 주위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이 불명확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연예인이라든지 유명인에 대한 핫이슈가 터졌을 때, 취재진들은 특종에 대한 욕심이 강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상파나 종편, 보도PP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뉴스 보도를 하지는 않지만 E뉴스나 와이드연예뉴스 같은 프로그램에서 많은 연예 정보를 다루고 있고 오락 교양물에서도 관련 내용을 방송하게 될 경우 초상권, 성명권 등 인격권 침해 이슈가 나올 수 있는데, 해당 인물의 성명을 영문 이니셜이나 두(頭)문자로 표현하는 경우 요즘은 예를 들어 '안'씨 성(姓)의 연예인이 화제가

되었다면 'A'라고 표현할 때 '안'씨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예 'X' 등으로 표기하도록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표거절권'과 관련해서는 일반인들이 촬영을 허락하고 나서 실제 방송을 할 무렵에 마음을 바꾸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연예인들은 정상적인 출연료 등을 받고 출연 용역을 제공하니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관련 약정을 위반하지 않는데, 일반인들은 짧은 약식 동의서를 쓰기도 하지만 방송 실무 관행 및 여러 여건상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소정의 거마비 목적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녹화를 다 하고 나서 나중에 그 분들이 본인의 초상이나 인터뷰 내용을 내보내지 말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그 동안에 기획하고 취재하고 편집했던 것들이 고스란히 사장(死藏)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 이야기와 초상이 나가서는 안 된다고 뒤늦게 요구를 해 올 경우,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방송사로는 고스란히 인적, 물적 비용으로 남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혹은 지급했을 때, 약정이 있을 때 혹은 없을 때에 관해 발제하신 김재형 교수님이 최근에 쓰신 책 '언론과 인격권' 안에 '무상동의', '호의동의'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미담기사의 경우, 저희들은 미담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본인들은 그런 미담조차도 프라이버시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일반인 출연자들이 제공해주는 사진 중에 자기만 나오는 사진은 본인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겠지만, 문제는 본인이 다른 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제공해주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함께 찍은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초상 노출에 대한 허락을 받는 게 원칙이겠지만, 여러 가지 제작 여건상 출연자에게 다른 분들의 초상 사용허락을 받았냐고 물었을 때 출연자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노출했을 경우 문제가 되어서 실제 중재위에 분쟁조정신청을 당했던 경험도 있어 유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민법상 미성년자가 만20세 미만이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만19세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미성년자가 자기 사진을 제출하여 방송사가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

하게 되는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부분도 방송사들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공적 인물의 범위와 공적 인물들이 하는 행위 중 허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실무상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또한 범죄 관련 프로그램에서 피의자 신분 공개와 관련해서 과연 '익명보도를 해야 하는가, 실명보도를 할 수 있느냐'하는 것들이 실제 제작현장에 많이 고민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가 방송한 여성 대상 프로그램에서 요즘 흉악 범죄, 특히 성폭행 범죄가 많다 보니까 관련 아이টে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 청주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다가 야산에서 목을 매서 자살한 사건이 내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수사망이 좁혀지자 자살했기 때문에 관련 범죄의 가해자인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지명 수배전단에 나온 사진과 성명을 과연 방송에서 노출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용의자가 자살은 했지만 아직 정식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유족들이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성명도 가리고 얼굴도 모자이크를 하자는 의견을 법무팀에서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편, 사생활에 관한 보도문제에서 연예인들이 과연 공인이나, 그리고 공인이라면 그들의 어떤 영역까지 언론이 보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결혼 적령기에 있는 인기 여자 연예인이 남자와 몰래데이트를 하게 되면 누구나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게 과연 공공의 이익, 공적인 관심사 이런 것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관련 판례의 태도는 성문제라든지, 건강에 대한 문제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공인이라고 할지라도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언론분쟁조정 절차에서의 손해배상 조정액과 관련하여, 제가 알기로 중재위원회에서도 손해배상 산정액 기준표 또는 가감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표를 통해서 적정하게 어떤 사유들이 조정 시 참작되고 가중, 감경되는지에 대한 것을 미리 알 수 있다는 건 아주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 일반인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분쟁조정 신청 건들이 계속 증가

하고 있고, 청구 금액도 높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부합해서 조정액이 높아진다고 하면 각 방송사업자나 신문사업자 등 언론사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헤아려주셨으면 좋겠고, 또 조정이나 중재의 취지가 정식 재판절차에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합의를 하자는 취지니까 그런 점에서도 언론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조정을 권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교수님께서 발제하셨는데, 저희들이 자체 제작도 하지만 외주제작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지상파나 PP사업자도 관련 외주제작계약의 내용이 도급일수도 있고 위임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납품받은 방송 테이프를 최종적으로 철저히 검수를 하고 제반 위법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잘 아시다시피 제작 여건이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하고 검수, 편집해서 최종적으로 시정하기에는 시간이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여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종합정보제공사업자의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글의 삭제의무 이슈는 워낙 다수의견, 소수의견, 별개의견으로 법적 논란이 많았던 이슈여서 제가 쉽게 논평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반인 출연자들에 대한 비방 글들을 채널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내려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될 경우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는 것은 대부분 회원으로 로그인한 분들이므로 이용약관상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글들은 제작진에서 임의 삭제가 가능하긴 하지만 그런 게시글들을 삭제하다 보면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해 이슈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사례와 같은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임의 삭제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기관도 사진이나 UCC 등 동영상을 게시판에 게시해서 뽑는 프로모션 행사 등을 할 때 유의해야 할 부분이 그 분들이 올린 사진이나 동영상이 타인의 초상권 등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점입니다.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례 중에 재미있었던 것이 부산에서 명절 귀성차량 행렬을 방송하면서 톨게이트 요금소 직원의 얼굴이 노출되어 그 분이 초상권 침해로 소송을 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최근 일

반인들의 초상권 등 인격권에 대한 권리 의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사들도 이런 추세를 인식하여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겠고, 언론중재위에서도 일반인들의 권리 구제와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 제고가 조화롭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김재형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흉악범 보도의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매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진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좋으나 아니냐’하는 것인데 그게 아주 끔찍한 범행이고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을 일으켰다던지 하는 경우라면, 사진을 보도한다고 하더라도 문제 삼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전세계적으로 보도하기도 합니다. 그것에 반해서 청소년이 폭행을 한 것 등이 문제가 된 경우라면 대체로 얼굴까지 내보낼 필요가 있느냐, 또는 학교라든지 이름을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범죄라 할지라도 그게 흉악범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 사람이 성년이나 아니면 10대 청소년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오히려 일률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이 위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얼굴이라든지 이름을 내보내서는 안 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청소년은 자라고 있는 학생이고 이후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성장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을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더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에 비해서 흉악범죄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피의자나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인격적 이익은 고려를 덜 해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독일에서 유명한 판결이 있습니다. ‘네바하’라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에서는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것에 관해서 보도가 다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20년쯤 지나서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출소할 무렵에 언론에서 ‘네바하’ 사건에 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독일연방 헌법재판소에서 ‘범

죄를 막 저질렀을 때 보도하는 것은 괜찮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그 사람이 사회에 복귀할 필요성, 사회에 복귀할 이익이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방송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 직면해서 여러 사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형량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하나하나 해결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얼굴을 가려야 된다'라는 점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만 어떤 범죄인지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떨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도운 부장님은 위낙 많은 부분에 관해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고 질문도 해주셔서 몇 가지만 답하겠습니다. 주위사람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면 제작하는 쪽에서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유방확대 수술을 받은 사람이 '자기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인터뷰에 동의를 했더라도 주위사람들이 정말 모르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1998년 상황입니다. 1998년에는 '유방확대수술을 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 경우에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될 것이다' 혹은 '그 사람의 사생활이 침해될 것이다'라고 보통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현재는 아마 똑같은 유방확대수술이라고 할지라도 다르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뒷부분에서 성적인 부분 등에 대해 이야기해주셨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여전히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보호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밀영역 혹은 비밀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좀 더 크게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사진을 촬영한다든지 인터뷰한 것에 동의를 했는데 나중에 변심한 경우 어떻게 되느냐' 혹은 '인터뷰와 사진 찍는 것을 다 허용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진이 잘 안 나왔을 경우 철회할 수 있느냐'하는 것은 철회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른바 대가를 받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고, 계약형태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른바 '무상동의', '호의동의'라고 하는 것, '아무런 대가 없이 사진을 찍어도 좋다'고 한 경우라면 대체로 인터뷰 끝난 다음에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가를 받은 경우

에는 쉽게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계약 취소 사유가 있어야 하며 쉽게 철회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생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내보내서는 안 되고 법정대리인에 해당하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성년자인데 나체사진을 찍어서 내보내는 것에 아이가 동의를 했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에 관해서 독일에서 많이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공인과 관련된 것은 연예인과 같은 경우에 논란이 많이 있는 것인데 대체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연예인의 경우에는 공인 또는 공적 인물이라고 봐서 책임을 면해주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건강이나 성적인 문제 등은 보도나 방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도 동의를 받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트하는 정도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은 애매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기준표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준표를 작성하더라도 그것이 판사를 완전히 구속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준표들은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점점 만들어가고 수정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형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양형에 관해 기준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도가니 같은 사건이 있으면 양형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어떻게 하고, 또 강간사건 등 성범죄에 관해서 양형기준이 높아지고 하는 것들이 괜찮은가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손해배상기준표에 있어서도 많은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드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동불법행위에 관해서는 결국 외주사업자가 문제가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그런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방송사 입장에서도 외주사업자를 통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피해자는 외주사업자 뿐만 아니라 방송국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이며, 그런 경우에 방송국에서 외주사업자에 대해서 다시 피해를 회복하는 것, 이른바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구상권에 관해서 분담 부분은 애매하기 때문에 외주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 당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구상권을 행사한다든지, 손해를 분담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세밀한 기준을 정해서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종합토론

### ■ 박현채 (서울제5중재부 중재위원)

제가 중재위원을 1년 남짓 해오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초상권 침해입니다. 이것을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되는가'이 부분은 모든 위원들이 마찬가지로입니다. 배재만 부회장님도 '중재위에서 하는 기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재형 교수께서 법적인 측면에서 현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이고 보편타당성 있는 기준을 제시해주셨다고 봅니다. 미국, 독일, 한국의 판례들을 인용해가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그 기준을 익히셔서 거기에 맞도록 해주시는 것이 기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전부는 아닙니다. 실제로 제소 혹은 신청된 사례에는 특이한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02년도 월드컵 응원사진을 찍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왜 내 사진을 찍었느냐'하는 경우도 있고, 단풍 시즌에 TV에서 헬기를 가지고 영상을 찍었는데, 헬기에 있는 사람이 가서 '내가 당신 사진을 찍겠소'할 수도 없고, 만약 자기 와이프가 아닌 사람하고 손잡고 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손해배상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매우 특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기준을 만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언론이 사진을 잘못 찍어 초상권을 침해했다면 물론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흉악범들을 많이 찍기도 하고 보도도 많이 합니다. 흉악범의 경우에 우리나라는 경찰에서 사진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무죄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잡힌 사람이 흉악범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언론에서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여론재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과연 그 사람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법이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기자와 성직자는 약자를 보호하고, 인격권에 대해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는 공익적 이익을 위해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구조적인 원인을 찾으려고 사진도 찍고 증거도 찾다 보니 초상권 침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재위원님들께서도 기자들의 탐사보도에 대해서는 고려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편, 과거 불량만두 보도로 인해 사장이 죽었습니다. 사실 사진으로만 보면 불량만두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는데, 그냥 불량만두라고 하니까 기자들이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무죄판결이 났을 때 그 사장은 이미 죽었는데 언론사가 책임질 것도 아니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 김재형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원과 중재위원회의 손해배상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찌 보면 사안이 가벼우면 중재단계에서 끝날 수도 있는데 법원에 가서 소를 제기하고 변호사 선임할 정도면 사건이 중대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액수가 커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하면 변호사 선임비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손해배상 액수가 정해질 수 있는 점도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평균적으로 천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된다 하여 그와 똑같이 중재위원회에서도 평균 천만 원 정도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통계수치에 나와 있

는 것처럼 수준 차이가 너무 크다면 손영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철관 회장님께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 사진 같은 것을 보도하느냐 마느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에서 발표를 하더라도 그게 정말 믿을 만한 것인지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발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피해자 등에게 확인을 한다든지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 전화를 해 보면 그 회사에서 쉽게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었는데 아예 전화도 해보지 않았다면 책임을 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불량만두 사건에 관련해서는 공익에 관한 보도는 단순히 허위라고 해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라 하더라도 언론기관 입장에서 그런 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언론기관의 책임을 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사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익명보도원칙에 관해 대법원에서 99년에 아주 중요한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익명으로 보도를 하라, 특히 사인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라는 것인데, 공인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이 정말 이름을 보도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김정숙 (대구중재부 중재위원, 영남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초상권의 경우에 면책 기간이 없는지요? 예를 들어 몇 년이 지나면 인용을 해도 괜찮다거나 책에 쓸 때 30년 전 사진 또는 50년 전 6·25 때 아이의 사진을 썼는데 나중에 와서 '그게 자기 사진이다'라고 주장할 때 시간적인 측면에서 면책 기준은 없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또 초상권 손배의 경우, 일면에 실렸는지,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 김재형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오래 전에 찍었다 하더라도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초상권은 여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한 경우에도 사자의 인격권이라고 해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오래 지났다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죽은 지 60년이 지났다면, 30년이 지났다면 그러면 현재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광고에 쓴다면, 예를 들어 제임스 딘의 사진을 광고에 이용한다면 등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관해서는 이른바 '퍼블리시티권 침해'라고 해서 따로 보호를 받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없고, 지방법원 판결에서 이런 저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호기간에 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30년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견해도 있고, 50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 70년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현재는 대체로 기간에 대해서는 살아 있는 경우라면 계속 보호를 받고 사자의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서 또는 언론에 의한 보도나 광고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될 수 있으면 사진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일면에 있느냐 뒷면에 있느냐 등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정하는데 내용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 ■ 박도윤(CJ E&M 법무팀 부장)

제가 경험했던 케이스 중에 뉴욕에 소재하는 콜롬비아대학교 내에서 촬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학교 측에서 캠퍼스 내에 촬영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촬영된 영상에 잡히는 사람들에게 다 허락을 받은 영문품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영상을 보고 그 초상을 허락한 품의 수를 다 매칭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허락한 것이 맞느냐, 허락하지 않았으면 삭제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물론 콜롬비아

대학교가 유별나게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트렌드가 우리나라에도 도래하지 않을까 생각하였습니다.

■ **오동명(한국인터넷기자협회 사진특위위원장)**

대선과 관련해서 특정 후보자의 표정이 안 좋게 나온 사진에 대해 비서관 등이 언론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편집권을 인정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손영준(서울제3중재부 중재위원,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나주 성폭행 피의자 고모씨의 경우, 법원에서 재판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흉악범이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로 그 사람의 초상권이 상당 부분 사인과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면 재판은 왜 있는지, 언론이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구조적인 맥락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정보과잉의 시대냐, 정보부족의 시대냐 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과잉의 시대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보라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정보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적인 이익과 관련된 정보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알 권리라는 관점에서 초상권이 침해되는 영역을 넓힌다고 했을 때 누가 현실적으로 이익을 보느냐, 이익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독자냐, 신청인이나 아니면 언론이나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이것과 관련되는 논의는 누가 정하느냐입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이런 논의를 누가 정해야 하느냐, 어떤 통치시스템이냐에 관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논란이 되긴 합니다만, 고모씨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부분 소외된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어 질문을 드립니다.

## ■ 김재형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대선 후보에 관한 보도는 어떤 사진을 올려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선후보 정도 되면 그야말로 공적인물 중에서도 공적인물, 대선 후보로 나섰으면 모든 부분에 관해서 검증할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현재 방송이나 신문에서 보도하는 사진이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대선 후보에 대한 아주 내밀한 부분,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겠지만 그 이외의 것은 사진이 사실이라면 그 부분에 관해 책임지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관해서 공정성 시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언론사가 한 후보는 찡그리는 모습을 하고, 한 후보는 활짝 웃는 모습이었던더라도 악의적이거나 그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공격을 받아서 문제가 될 순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나주 성폭행 피의자 고모씨의 경우 오보로 판명된 사람이라면 당연히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사 입장에서 방어할 수 있는 게 아예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게 공인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방어할 수 있기에 모든 증거가 나왔을 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피의자라고 지목된 사람이 나중에 무죄를 받았을 경우에도 비슷한 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재판이 왜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재판이 3심까지 가면 현실적으로 1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경우에 따라서는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중간에 혹시 위증한 사람이 있어서 재심이 들어온다면 또 시간이 지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92년에 형사재판 때 판결 쓴 것이 재심 들어와서 7~8년 후에 보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보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범죄사건에 관한 보도에서 언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주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보도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을 것입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어떤 이익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독자나 시청자, 넓게는 국민의 이

익이 아닌지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알 권리'라는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국은 알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독자들이 알아야 되는지, 그로 인해서 공적인 논의를 촉발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정우(한국인터넷기자협회 부회장, 투데이코리아 편집국장)

지명수배를 당했던 사람이 검거가 돼서 실형을 살고 자기의 수배전단이 신문에 나왔던 것을 내려달라고 민사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중도에 포기해서 결과를 알 순 없었지만, 만약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됐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 임병렬(서울제4중재부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앞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기사삭제청구까지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에 자기 신변에 관한 불이익한 정보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인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이 개정된다면 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대오(오마이스타 국장대우)

제가 몸담고 있는 연예계에서는 과연 연예인이 공인이나, 아니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이나 하는 판단이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제가 언론중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형사와 민사사건으로 연루되었던 사건이 이른바 '장자

연 문건 공개' 건으로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연예인 사건은 아니었지만 전 국회의원이었던 박기동 의원이 술집에서 여종업원을 추행하는 동영상을 공개한 건으로 민사 1억하고 형사까지 소를 받았다가 결국 박기동 의원이 소 취하를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박기동 의원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공인이었고, 몰래카메라로 영상이 제작되었다는 점이 있었지만, 제가 몸담고 있던 회사에 자문을 해주시는 변호사가 그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이고 초상권 침해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옳다고 조언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성 보도였다,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반론보도를 제공했다는 것으로 결국 박기동 의원이 소 취하를 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연예계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파파라치식 취재에 의한 사생활 침해'입니다. 연예인의 공적 영역, 사적 영역, 대부분의 연예인 같은 경우는 파파라치식 취재를 당하는 경우가 사건·사고라기 보단 연애를 하는 장면과 같은 형태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적 영역은 연예인이더라도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중재위에 신청된 사건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파파라치식 취재에 의해서 언론중재위에 오는 것은 정용진 신세계 회장 외에는 단 한 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연예인이 자신을 공인이라 여기기 때문에 언론중재위나 명예훼손과 관련된 소송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다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파파라치식 취재를 지양할 수 있는 제도든 홍보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예인이 공인이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유명인이냐에 관한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 ■ 김재형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2002년 가수 비가 인기 있었을 무렵인데, 대학원 학생들에게 '가수 비는 공인인가?' 하는 질문을 했더니, '공인이 아니다'는 대답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에

‘언론·인터넷·인격권’이라는 로스쿨 강의에서 ‘유명가수가 공인인가’하는 질문에서 ‘공인이다’고 답변하는 학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건 아마 언론과 관련된 법에 관해 알려지기도 했고, 대법원 판결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관념하고는 맞지 않는 표현방식입니다. 공인이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 중에서도 장관이나 국회의원 같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공인이라 하지, 연예인은 옛날에는 그야말로 중인계급이던지, ‘딴따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와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유명인이라는 표현이 좀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미국 뉴욕타임즈 사건에서 공인이 고위직 공무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출발했는데, 그 후 언론의 면책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고위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유명인으로 넓혀가면서 공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 미국법 이론이 우리나라에 수입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공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도 공인의 기준에 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공인이라는 것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미국에서도 유명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이 공인인지 유명인인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것에 따라서 결론이 크게 차이가 있진 않을 것입니다. 유명인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관해 알아야 될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대해 보도하는 것에 대해 똑같이 언론사가 면책되는 범위가 일반 사인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파파라치는 유명인이나 공인인 경우에만 따라다니지, 일반인을 따라다니며 취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면책 범위가 넓겠지만, 취재방법이 문제가 있다든지, 미행을 했다면 책임이 쉽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호텔에 낫선 남자와 들어가는 모습 등은 쉽게 보도를 해서는 안 될 내용이라고 생각되지만, 길거리를 돌아다닌다든지 레스토랑 정도 들어가는 것을 보도했다고 책임을 추궁 당하진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적인 영역이라도, 일반인의 사적인 영역이라면 그 자체로 보호가 되고 동의 없이는 보도를 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내보내서는 안 되겠지만 유명인이라면 그 범위가 그 보다는 넓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 배재만 (한국사진기자협회 부회장, 연합뉴스 사진부 차장)

초상권 침해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기준을 정하자고 한 것은 개별 사건에서의 분위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판단할 때 일반적인 기준은 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초상권 뒷모습 같은 경우, '윤곽이 나왔을 때 옆에 사람이 알아볼 수 있을 경우' 같은 조건이 있듯이 중재위원들 다섯 분 중에 '이거 가지고 그렇게 하긴 뭐하다'라는 식의 판단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흉악범 이야기가 나와서 여쭙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에서 신문의 자료사진을 DB화해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신문들도 다 볼 수가 있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독일에서 20년 후에 출소 시에 보도해서는 안된다'라는 부분을 연관 지어 말씀드리면, 누군가 자신의 죄에 맞게 20~30년 형을 살다 나와서 지금 와서 20~30년 전의 신문을 네이버에서 보고 그 신문에 난 내 사진을 지워 달라 했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2009년 개정된 조항에 따르면 보도된 지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고, 인지한 지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받아들여진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대해서 초상권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중재위원회 측 물었더니 그것은 언론중재위의 소관사항이 아니라 법원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법원으로 가게 되면 판결은 어떤 식으로 날 가능성이 있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의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 더 질문하고 싶습니다. 초상권 저촉을 받지 않으려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세미나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찾아보니까 명시적 동의, 묵시적 동의, 추정적 동의가 있었습니다. 명시적 동의는 문서나 구두로 촬영을 승낙하는 경우고, 묵시적 동의는 명시적으로 승낙하지 않더라도 카메라와 마이크 앞에서 호의적인 미소를 지으면서 질문에 답하거나 촬영에 협조한 경우, 크리스마스 저녁에 애인과 팔짱을 끼고 명동대로를 확보하다가 뉴스카메라에 촬영되었거나 공원에서 애인과 데이트하다 찍힌 경우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추정적 동의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부재중이거나

본인에게 의식이 없어서 필요할 때에 승낙을 받을 수 없었지만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승낙이 확실히 기대되는 경우였고, 보다 구체적으로 추정적 동의라는 것은 플로리다 퍼블리싱 회사 대 플레처(Florida Publishing Co. v. Fletcher) 사건에서 '사진기자가 소방관의 뒤를 따라 화재로 파괴된 주택에 들어가 촬영한 경우, 법원은 뉴스매체에 관례에 근거한 추정적 승낙을 인정해서 기자의 책임을 부인함'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언론중재위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여쭙보고 한편으로는 건의하고 싶습니다.

### ■ 오광진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언론중재위원회는 손해배상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손해배상액 산정표'와 '손해배상액 산정가감표'를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중재위원 워크숍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중재부간에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배재만 부회장님께서 신청인이 위원회 측에 손해배상액을 문의했었다는 말씀 하셨는데, 위원회 상담팀은 법무 업무에 능통한 전문 상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법원 판례, 언론중재위의 사례 등을 토대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가 '100만원 신청해라, 200만원 신청해라' 식으로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해주는 경우는 없으며, 다만 상담자가 잘 모르니까 유사 사례에 대해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법원 판례 혹은 언중위의 사례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합니다.

또, 손해배상의 일관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중재위는 현직 부장판사, 전직 언론인 등 법조인과 언론인들이 한 중재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합리적이면서도 언론사의 입장을 반영한 합의 방안을 제시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저한 증거조사를 통해 양 당사자들이 사안에 대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재위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 김재형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20년 지난 과거 사진을 올리는 것은 새로운 문제로 앞으로 연구를 해야 할 좋은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동의와 관련해서는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묵시적 동의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TV 카메라에 친근하게 웃는 경우, 동의했다고 하진 않았지만 그 행동에서 동의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비행기에서 여배우가 내리면서 슬쩍 포즈를 취하면서 솔을 벗었는데 너무 많이 벗은 모습이 실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에 관해서도 동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명시적 동의나 묵시적 동의가 아니더라도 여러 상황을 봐서 '동의를 했을 것이다'라고 인정되면 추정적 동의가 인정됩니다. 어려운 개념입니다만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 ■ 한박무 (대전중재부 중재위원)

사회적 문제를 촉발시키거나 공분을 일으킨 흉악범이 누군지 알고 싶어 하는 건 국민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론은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알려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상 언론이 국민을 짓누르는 권력기관을 자처하던 시절에는 '피의사실공표죄'가 있었으나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마구 피의사실을 공표했지만 누구 하나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 국민 소득이 높아지고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사회참여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점점 더 법이 만들어 놓은 권리를 향유하겠다는 국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초상권 침해다, 명예훼손이다'라는 문제가 차차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기자들이 초상권 문제 때문에 크게 곤욕을 당하고 있고, 이런 경향은 앞으로 더해지리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인인 경우,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이어야만 보도가 가능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재형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피해자가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언론사가 책임을 면한다는 것입니다.

■ 임병렬 (서울제4중재부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 자리가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서로의 이해가 상충되는 자리로 현직에 계신 분들은 '구체적이고 자세한 기준을 제시해주면 일하기 편하겠다'라는 심정에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수학적공식에 대입해서 결론을 내듯이 규율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의 상식과 규범, 법률들이 기준이 돼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느냐 안하느냐를 판단해나가는 것이겠죠. 단지 우리가 이런 자리를 빌어서 우리 입장에서 '그냥 평범한 사진 가지고 왜 시비를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사진에 찍힌 상대방이었다면 어떠했을까'라고 한 번 더 생각해본다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 안내

사무처 및 서울중재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대표전화 : 02) 397-3114 언론분쟁상담 : 02)397-3000, 3010, 3100, 3110 팩스 : 02) 397-3089
부산중재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39(수영동 503-17)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8층 전화 : 051) 759-7083~4 / 팩스 : 051) 759-7093
대구중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26(황금동 541-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전화 : 053) 763-0020~1 / 팩스 : 053) 763-0242
광주중재부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85(주월동 1274-2)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A동 5층 전화 : 062) 676-0360~1 / 팩스 : 062) 676-0362
대전중재부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450(용문동 227-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전화 : 042) 525-0778~9 / 팩스 : 042) 525-0768
경기중재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단 8층 전화 : 031) 211-9022, 9027 / 팩스 : 031) 211-0223
강원중재부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요선동 4-9) 무림빌딩 8층 전화 : 033) 255-2878~9 / 팩스 : 033) 255-2872
충북중재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삼남로 64(산남동 657) 엔젤변호사빌딩 404호 전화 : 043) 286-8081, 8083 / 팩스 : 043) 286-8084
전북중재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감영로 72(전동2가 140-11) 전주상공회의소빌딩 303호 전화 : 063) 288-0010, 0981 / 팩스 : 063) 288-0980
경남중재부	경남 창원시 창이대로 695번길 5(사파동 80번지) 보고빌딩 601호 전화 : 055) 263-1780, 1787 / 팩스 : 055) 263-1769
제주중재부	제주도 제주시 남광북 5길 6(이도2동 1081-3) 현곡빌딩 4층 전화 : 064) 722-3328, 3352 / 팩스 : 064) 726-3201